

대 법 원

제 2 부

판 결

사 건 2024도12571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입찰방해

피 고 인 1. 가.나. A
2. 가. B 주식회사
3. 가.나. C
4. 가. 주식회사 D
5. 가.나. E
6. 가.나. F
7. 가. 주식회사 G
8. 가.나. H
9. 가. 주식회사 I
10. 가.나. J
11. 가. K 주식회사
12. 가.나. L
13. 가. 주식회사 M

상 고 인 검사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정일, 윤성운, 서경원, 안준규, 배소희, 손윤서,

임지석, 문원영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범수, 이능규, 박기성, 서은빈, 김석준, 김현지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E, F, 주식회사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수, 이재근, 양재준, 이대식, 신원준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H, 주식회사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경수, 이재근, 윤용희,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J, K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박재필, 김재형, 정경환, 김영승, 김용현, 정우영

변호사 이중표, 서동욱(피고인 L을 위하여)

변호사 박병대, 김성욱, 전종원(피고인 주식회사 M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고등법원 2024. 7. 23. 선고 2023노833 판결

판 결 선 고

2025. 12. 4.

주 문

상고를 모두 기각한다.

이 유

형사재판에서 공소가 제기된 범죄사실은 검사가 입증하여야 하고, 법원은 합리적인 의심을 할 여지가 없을 정도로 공소사실이 진실한 것이라는 확신을 가지게 하는 증명력을 가진 증거를 가지고 유죄로 인정하여야 하므로, 그와 같은 증거가 없다면 설령 피고인에게 유죄의 의심이 간다고 하더라도 피고인의 이익으로 판단할 수밖에 없다(대

법원 2008. 5. 29. 선고 2006도6625 판결 참조).

원심은 판시와 같은 이유로 피고인들에 대한 공소사실에 대하여 범죄의 증명이 없다고 보아 무죄로 판단하였다. 원심판결 이유를 관련 법리와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에 비추어 살펴보면, 원심의 판단에 논리와 경험의 법칙을 위반하여 자유심증주의의 한계를 벗어나거나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죄 및 입찰방해죄의 성립에 관한 법리 등을 오해하여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없다.

그러므로 상고를 모두 기각하기로 하여, 관여 대법관의 일치된 의견으로 주문과 같이 판결한다.

재판장 대법관 임상필 _____

주 심 대법관 오경미 _____

 대법관 권영준 _____

 대법관 박영재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서 울 고 등 법 원

제 3 형 사 부

판 결

사 건 2023노833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나. 입찰방해

피 고 인 1.가.나. A
2.가. B 주식회사
3.가.나. C
4.가. 주식회사 D
5.가.나. E
6.가.나. F
7.가. 주식회사 G
8.가.나. H
9.가. 주식회사 I
10.가.나. J
11.가. K 주식회사
12.가.나. L
13.가. 주식회사 M

항 소 인 쌍방

검 사 김준선(기소), 정정욱(공판)



변 호 인 법무법인(유한) 태평양(피고인 A, B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문정일, 서경원, 임지석, 배소희

 법무법인 케이엘파트너스(피고인 C, 주식회사 D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능규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E, F, 주식회사 G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근, 이대식

 법무법인(유한) 율촌(피고인 H, 주식회사 I을 위하여)
 담당변호사 이재근, 김민지

 법무법인(유한) 바른(피고인 J, K 주식회사를 위하여)
 담당변호사 김재형, 정경환, 김영승, 김용현

 변호사 이중표, 서동욱(피고인 L을 위하여)

 변호사 김성욱(피고인 주식회사 M을 위하여)

원 심 판 결 서울중앙지방법원 2023. 2. 1. 선고 2020고합649 판결

판 결 선 고 2024. 7. 23.

주 문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한다.
피고인들은 각 무죄.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한다.

이 유



1. 항소이유의 요지

가. 피고인들

1) 피고인 A, 피고인 B 주식회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경쟁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업체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하는데,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B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B'라고만 한다) 이외에 다른 사업체는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한 점, 이 사건 각 입찰은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이러한 경우 세금계산서 정산 또는 병의원에서 보관하는 백신이 사용되지 않을 위험성 등으로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사업체가 입찰하는 것이 불가능한 점, 최근 Q 백신에 관한 조달계약이 수의계약으로 체결된 점, 세금계산서 발급문제로 인하여 2016년도 Q 백신 입찰에서의 낙찰자는 피고인 B가 될 수밖에 없었던 점, 질병관리본부(현 질병관리청, 이하 '질병관리본부'라고 한다) 또한 이 사건 각 입찰에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인식하였던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는다.

(나) 경쟁제한적 효과의 부존재

①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행위가 없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B 이외의 다른 업체가 2016년 Q 백신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백신을 공급한다거나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입찰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전혀 없고, 들러리 업체를 세운다고 예정가격이 상승하는 것이 아니므로, 들러리 업체를 세운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해 어떠한 경쟁제한적인 효과가 발생하지 않았다.

② 피고인들은 질병관리본부의 요청으로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행위를 한 것이고, 위와 같은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오히려 Q에 대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ational Immunization Program, 이하 'NIP'라 한다)이 원활히 이행되어 소비자 후생을 증대하는 등의 경쟁촉진적 효과가 발생하였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2) 입찰방해 부분

위와 같이 피고인 B 외의 사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가 될 현실적인 가능성이 없었던 점, 질병관리본부가 피고인들에게 공동행위를 종용하였던 점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행위가 적법하고 공정한 입찰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거나, 자유경쟁을 통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 부분

피고인 A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준다는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A: 벌금 300만 원, 피고인 B: 벌금 3,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2) 피고인 C, 피고인 주식회사 D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경쟁의 부존재

① 이 사건 각 입찰은 제품별 입찰로 진행되었는데, 백신 제조사와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D(이하 '피고인 D'라고만 한다)만이 T 백신을 공급할 수 있었고, 다른 사업자들은 피고인 D로부터 위 백신을 공급받은 후 판매할 수밖에 없었으므로, 다른 사업자들은 가격적 측면에서 피고인 D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 있는 지위에 있지 않았다.

② 또한 이 사건 각 입찰은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진행되어 그 물량이 상당하였는데, 피고인 D 외의 다른 사업자는 위와 같은 대규모 조달을 수행하기 위한 역량을 제대로 갖추지 못하였던 점, 백신 제조사가 피고인 D와의 공동판매계약을 위반할 위험을 무릅쓰고 공급 역량이 충분히 검증되지 않은 다른 사업자에게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줄 이유가 없는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AH 주식회사(이하 'AH'이라 한다)는 피고인 D와 불가분의 관계에 있는 사실상 하나의 업체여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이므로, 이를 근거로 다른 사업자들도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을 것이라고 보아 이 사건 각 입찰에 경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나) 경쟁제한적 효과의 부존재

① 위와 같은 백신이라는 제품 자체 및 그 조달 방식에 내재한 특수성으로 인하여 피고인 D가 아닌 다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하여 피고인 D와 실질적으로 경쟁할 수도, 유효하게 낙찰받을 수도 없었고, 실제로 다른 사업자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아무런 경쟁의사를 가지지 않고 있었으므로, 피고인들은



백신 입찰 시장과 사업자들에게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않았다.

②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가격경쟁의 가능성이 애초에 존재하지 않았고, T 백신에 대하여는 수의계약 체결이 가능했음에도 NIP 시행 일정을 맞추기 위해 이 사건 각 입찰을 진행한 것인바, 피고인들의 공동행위가 아니었다라면 T 백신에 관한 NIP 사업이 적기에 시행될 수 없어 다양한 사회적 문제와 비용이 초래되었을 것이므로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어떠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정당한 사유의 존재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한 것은 질병관리본부의 종용 내지 요구에 따른 것으로서 사실상의 강제력이 있는 행정지도에 따라 불가피하게 이루어진 것이다.

(라) 양벌규정 적용 부분

AH과 피고인 D를 별개의 법인격으로 본다면, 피고인 C가 AH을 위하여 들러리 업체를 세운 행위도 피고인 D와 무관하다고 평가하여야 한다. 설령 피고인 C의 행위가 피고인 D와 일부 관련성이 있다고 하더라도, 피고인 D는 피고인 C의 위법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의무와 감독의무를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D에게 양벌규정을 적용할 수 없다.

(2) 입찰방해 부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사정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입찰의 공정성이 저해되지도 않았다.

(3)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 부분

피고인 C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하거나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



한 영향을 준다는 인식과 의사가 전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C: 벌금 300만 원, 피고인 D: 벌금 5,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주식회사 G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경쟁의 부존재

① 백신 수입사인 P 유한회사(이하 'P'라 한다)와 피고인 주식회사 G(이하 '피고인 G'라고만 한다) 사이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 국내에서는 피고인 G만이 Q 백신을 유통·판매할 수 있었고, 피고인 G를 제외한 다른 업체는 입찰절차 진행의 필수조건인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입찰에 참여하더라도 낙찰자로 선정될 수 없었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처음부터 경쟁입찰의 실질이 존재할 수 없었다.

② 특히 Q 백신은 정산 및 유통방식이 매우 까다로워 다른 업체가 막대한 정산 및 유통비용을 부담해 가며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고, 다른 업체가 낙찰을 받더라도 계약의 이행 자체가 불가능하였으므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③ 이 사건 이후 질병관리본부가 NIP 사업용 Q 백신에 대하여 수의계약을 체결하였다는 점에 비추어 보아도 이 사건 각 입찰에 경쟁이 부존재하였고, 질병관리본부도 이와 같은 사정을 잘 알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나) 경쟁제한적 효과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질병관리본부와 P가 사전에 상호 협의한 가격 범위 내에서 P가 지정한 금액으로 투찰한 것이고, 피고인 G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것이 아니다. 또한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 낙찰받을 의사로 참여하였다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할 수 없었으며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2) 입찰방해 부분

(가) 입찰방해되는 자유경쟁의 존재를 전제로 하는 것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아니하였으므로 피고인 E, F에게 입찰방해죄가 성립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제3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방해한 적이 없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도매상,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모두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한 입찰 절차의 진행을 요구하여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운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였다거나,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다고 볼 수 없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E, F: 각 벌금 300만 원, 피고인 G: 벌금 7,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4) 피고인 H, 피고인 주식회사 I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경쟁의 부존재

이 사건 각 입찰은 'T'라는 특정 품목을 조달하기 위한 입찰로서, 위 'T'는 백신 제조사와의 독점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주식회사 I(이하 '피고인 I'이라 고만 한다)만이 국내에 독점적으로 판매·유통할 수 있는 백신이었다. 따라서 이 사건 각 입찰 당시 백신 제조사 및 피고인 I과의 사전 협의가 없었던 이상 다른 업체는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없어 입찰에 참가하여도 낙찰받을 수 없었음이 명백한 점, 정산 및 유통구조 등 사실적인 측면에서도 다른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을 받아 'T'를 공급할 수 있는 개연성이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경쟁제한적 효과의 부존재

피고인들은 질병관리본부와 백신 제조사가 사전에 상호 협의한 가격 범위 내에서 백신 제조사가 지정한 금액으로 투찰을 한 것이지 피고인 I의 수익을 극대화하고자 한 사실이 전혀 없고, 피고인들의 공동행위가 없었더라도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이 존재하지 않으며,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 낙찰받을 의사로 참여하였다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유효한 경쟁이 성립할 수 없었고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도 영향을 미칠 수 없었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로 부당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벌규정 부분

피고인 I은 2007년부터 공정거래 자율준수 프로그램(CP)을 도입하



여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부당공동행위를 방지하기 위한 구체적인 내용이 포함된 관련 CP 교육을 적극적으로 실시하였고, 피고인 H도 위 교육을 수강하였는바, 피고인 I은 이 사건 공동행위와 같은 불법행위가 일어나지 않도록 피고인 H에 대한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다하였으므로 피고인 I에게는 구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2020. 12. 29. 법률 제17799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이하 '구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70조 단서의 면책사유가 있다.

(2) 입찰방해 부분

(가) 입찰방해죄는 자유경쟁의 존재를 전제로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행위를 처벌하는 규정인데,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피고인들의 행위가 입찰방해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 없다.

(나) 피고인들은 제3의 업체가 입찰에 참여하는 것 자체를 방해한 적 없고, 피고인들을 비롯한 도매상, 질병관리본부 관계자 모두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받을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는 상황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신속한 입찰 절차의 진행을 요구한 것이므로, 피고인들이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였다고 볼 수 없다.

(3)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 부분

피고인들은 부당한 경쟁 제한의 고의나 입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H: 벌금 300만 원, 피고인 I: 벌금 5,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5) 피고인 J, 피고인 K 주식회사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경쟁의 부존재

백신 제조사와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 피고인 K 주식회사(이하 '피고인 K'이라고만 한다)가 Y 백신의 국내 독점판매권을 보유하고 있었던 데다가 유통역량, 소요기간 등 현실적인 사정에 비추어 보더라도 제3의 업체가 Y 백신에 대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은 불가능하였던 점, Y 백신에 대한 입찰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된 점, 2021년도에는 Y 백신 공급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된 점, 이 사건 각 입찰에 참가한 당사자들도 경쟁이 존재하지 않음을 인식하고 있었던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다.

(나) 경쟁제한적 효과의 부존재

① 정부총량구매방식의 경우 조달수요가 백신 공급 매출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공동행위가 부당한 경쟁제한행위에 해당한다고는 볼 수 없을뿐더러, 기초금액 자체는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제조사인 피고인 주식회사 M과의 협의를 통해 결정하는 것이고, 예정가격 산출방식상 입찰 참가업체가 늘어난다고 예정가격이 올라갈 수도 없으므로 피고인 K가 가격형성에 영향을 미칠 수 없었다.

② 또한 제3의 업체가 낙찰받을 의사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부당한 경쟁제한성'을 판단할 때에는 NIP 사업의 적기 시행이라는 배경을 고려하여야 하는데,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로 인하여 더 낮은 수준에서 조달계약이 체결되었을 가능성이 사라



졌으므로 부당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볼 수 없다.

(다) 양벌규정 부분

피고인 K은 임직원들을 상대로 법령 준법교육을 철저하게 시행하는 등 사용인인 피고인 J의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않았으므로, 양벌규정에 따른 형사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2) 입찰방해 부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은 유효한 경쟁이 존재하는 입찰이라 볼 수 없어 피고인들이 2회의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후 들러리 업체와 함께 3차 입찰에 참여하였다고 하여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3) 피고인 J의 가담 정도 부분

피고인 J는 들러리 업체를 세우는 행위를 직접 분담하여 실행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피고인들의 입찰 참여 경위 및 역할, 피고인들이 입찰을 통하여 얻은 이익 유무 등 제반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 J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피고인 K이 낙찰자가 되도록 하는 데에 본질적 기여를 하였다거나 기능적 행위지배를 하였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피고인 J가 이 사건 범행의 공동정범으로서 책임을 부담한다고 할 수 없다.

(4)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 부분

피고인 J에게는 부당한 공동행위 및 입찰방해의 고의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J: 벌금 300만 원, 피고인 K: 벌금



3,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6) 피고인 L, 피고인 주식회사 M

가)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1)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 부분

(가) 경쟁의 부존재

① 이 사건 각 입찰은 제품별·정부총량구매방식 입찰이라는 특수성, 공동판매계약에 따른 독점공급권 부여, 낙찰조건으로서의 공급확약서 제도 등으로 인하여 피고인 주식회사 M(이하 '피고인 M'이라고만 한다)의 공동판매사만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최종 낙찰자가 될 수 있었고, 다른 업체가 피고인 M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공동판매사와 경쟁하여 낙찰자가 될 수는 없었는바, 이 사건 각 입찰에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② 이 사건 각 입찰의 관련자(공동판매사 담당자, 도매상, 질병관리본부 담당자, 조달청 담당자)들은 모두 피고인 M의 공동판매사가 낙찰받아 해당 백신을 조달할 것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점, 실제 조달청이 2021년 T, Y에 대한 질병관리본부의 수의계약 요청을 받아들여 피고인 M의 공동판매사와 수의계약을 체결한 점 등에 비추어 보아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고, 제3의 업체가 단지 입찰에 '참가할' 가능성이 있었다는 이유만으로 경쟁의 존재를 인정할 수는 없다.

(나) 경쟁제한적 효과의 부존재

①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예정가격은 입찰참가자들에 의하여 추천된 복수예비가격의 값에 따라 기계적으로 정해질 뿐 입찰참가자들의 투찰가격과는 아무런 연관이 없고, 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 시 최초 입찰에서 정한 가격 기타 조건



을 변경할 수 없어 기초금액이 달라질 가능성도 없으므로, 피고인들의 들러리 행위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낙찰가격에 부당한 영향을 미쳤다고 단정하기 어렵고, 피고인들은 수익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들러리를 세운 것이 아니다.

② 이 사건 이후 진행된 백신 입찰에서도 들러리 유무와 관계없이 모든 공동판매사가 기초금액 수준으로 낙찰을 받는 등 입찰 결과가 모두 동일하였던 점, 공동판매사가 이 사건 각 입찰 대상 백신의 유일한 공급자인 이상 경쟁입찰이나 수의계약 등의 조달 방식에 따라 백신 가격이 달라진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에 비추어 보면, 피고인들의 행위에 경쟁제한적 효과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

(2) 입찰방해 부분

위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들러리 행위로 가격 결정에서의 경쟁이나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할 위험이 있다고 보기 어렵다.

(3)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 부분

피고인 L은 들러리 업체를 세움으로써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경쟁을 제한한다거나 공정한 경쟁에 영향을 미친다는 인식이나 의사가 없었다.

나) 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형(피고인 L: 벌금 500만 원, 피고인 M: 벌금 7,000만 원)은 각 너무 무거워서 부당하다.

나. 겸사(양형부당)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의 각 형은 너무 가벼워서 부당하다.

2.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가. 피고인들 및 관련자들의 지위

피고인 A는 2005. 4.경부터 2017. 12.경까지 성남시 분당구 N에 있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B¹⁾의 백신 영업 담당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으로, 피고인 B는 2016년경 다국적 제약사인 O(O)의 국내 법인인 P와의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O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인 'Q(Q)'를 국내에 공급·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 C는 서울 종로구 R에 있는 백신 제제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D의 영업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D는 2016년경부터 2017년경까지 다국적 제약사인 S(S)의 국내 법인인 피고인 M과의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S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인 'T(T)'를 국내에 공급·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 E, F은 용인시 기흥구 U에 있는 의약품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G의 백신 영업 담당 직원으로 근무하는 사람들로, 피고인 G는 2017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다국적 제약사인 O의 국내 법인인 P와의 공동판매 계약에 따라 O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자궁경부암) 백신인 'Q'를 국내에 공급·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 H는 서울 동작구 W에 있는 의약품 등의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I의 백신 영업 담당 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I은 2018년경부터 2019년경까지 다국적 제약사인 S의 국내 법인인 피고인 M과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 S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인 'T'를 국내에 공급·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 J는 서울 서초구 X에 있는 의약품 제조·판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피고인 K의 백신 영업 담당 본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K은 2019년경 다국적 제약

1) 2017. 12. 1. 상호를 기존의 'V 주식회사'에서 'B 주식회사'로 변경하였다.



사인 S의 국내 법인인 피고인 M과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 S의 폐렴구균 백신인 'Y(Y)'를 국내에 공급·유통하고 있었다.

피고인 L은 서울 용산구 Z에 있는 의약품 제조·도매 등을 목적으로 하는 다국적 제약사인 S의 국내 법인인 피고인 M의 백신 영업 담당 팀장으로 근무하는 사람으로, 피고인 M은 국내 제약사들과 공동판매 계약을 맺고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인 'T', 폐렴구균 백신인 'Y' 등 다양한 백신을 국내에 유통하고 있다.

나. 구체적 범죄사실

1) 피고인 A, 피고인 B

가) 피고인 A

피고인은 2016. 6.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A, 기초금액 13,500,000,000원의 『AB』 입찰이 공고되자 위 백신을 B로 하여금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직접 낙찰받게 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주식회사 AC(이하 'AC'이라 한다)의 AD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AD는 사장인 AE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AD는 2016. 6. 10.경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금액인 기초금액 대비 101.85%인 13,750,0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B) 기재와 같이 AC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액 대비 98%인 13,275,000,000원에 투찰한 B가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13,500,000,000원 상당의 『AB』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B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A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피고인 C, 피고인 D

가) 피고인 C

(1) 2016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6. 6.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F, 기초금액 4,008,750,000원의 『AG』 입찰이 공고되자 D에서 취급하는 위 백신을 D의 계열회사인 AH으로 하여금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낙찰받게 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주식회사 AI(이하 'AI'이라 한다)의 AJ 사장, AC의 AE 사장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위 AJ의 지시를 받은 AI의 AK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금액인 기초금액 대비 102%인 4,088,924,000원에 투찰하였고, 위 AE의 지시를 받은 AC의 AD 역시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금액인 기초금액 대비 101.98%인 4,088,000,000원에 투찰하였다. 한편, 피고인은 D의 팀장인 BP을 통하여 AH의 입찰대리인인 AL에게 AH의 투찰가격



으로 기초금액 대비 100%인 4,008,750,000원을 전달하였고, 위 AL은 위 금액에 투찰하였다.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D) 순번 1 기재와 같이 AH, AI, AC 모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고, 3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6. 6. 21.경 기초금액 대비 100%인 4,008,750,000원에 투찰한 AH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J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4,008,750,000원 상당의 위 『AG』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7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M, 기초금액 5,077,750,000원의 『AN』 입찰이 공고되자 위 (1)항과 같이 AH을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AI의 AJ 사장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다.

이후 위 AJ의 지시를 받은 AI의 AK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금액인 기초금액 대비 102%인 5,179,300,000원에 투찰하였고, AH의 AL은 위 (1)항과 같은 방법으로 AH의 투찰가격을 전달받아 기초금액 대비 100%인 5,077,750,000원에 투찰하였다.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D) 순번 2 기재와 같이 AI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AH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J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5,077,750,000원 상당의 위 『AN』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D

피고인은 위 가)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C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G

가) 피고인 E

(1) 2017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7. 4.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O, 기초금액 20,186,300,000원의 『AP』 입찰이 공고되자 G에서 취급하는 위 백신을 G로 하여금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직접 낙찰받게 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주식회사 AQ(대표이사 AE, 이하 'AQ'이라 한다)과 AC(대표이사 AR, AE의 배우자)²⁾의 AD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위 AD는 사장인 AE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AD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2%인 20,590,0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G) 순번 1 기재와 같이 AQ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

2) AQ과 AC은 모두 AE이 운영하는 사실상 동일한 업체이다.



액 대비 100%인 20,186,300,000원에 투찰한 G도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3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7. 4. 13.경 기초금액 대비 100%인 20,186,300,000원에 투찰한 G가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20,186,300,000원 상당의 위 『AP』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8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S, 기초금액 11,980,000,000원의 『AT』 입찰이 공고되자 위 (1)항과 같이 G를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참여 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위 (1)항과 같이 AC의 AD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이후 AD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5%인 12,213,61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G) 순번 2 기재와 같이 AC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액 대비 100.42%인 12,030,000,000원에 투찰한 G도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8. 5. 17.경 기초금액 대비 100%인 11,980,000,000원에 투찰한 G가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11,980,000,000원 상당의 위 『AT』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F

피고인은 2019. 1.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U, 기초금액 25,697,100,000원의 『AV』 입찰이 공고되자 G에서 취급하는 위 백신을 G로 하여금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직접 낙찰받게 하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AC의 AD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AD는 사장인 AE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AD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6%인 26,200,0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G) 순번 3 기재와 같이 AC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액 대비 100%인 25,825,800,000원에 투찰한 G도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9. 1. 30.경 기초금액 대비 100%인 25,825,800,000원에 투찰한 G가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25,697,100,000원 상당의 위 『AV』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다) 피고인 G

피고인은 위 가), 나)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E, F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 나)항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4) 피고인 H, 피고인 I



가) 피고인 H

(1) 2018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W, 기초금액 3,207,000,000원의 『AX』 입찰이 공고되자 I에 위 백신을 공급하는 M의 L 팀장의 도움을 받아 위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위 L으로부터 '유찰 없이 I을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듣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위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AC의 AD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AD는 사장인 AE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AD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5%인 3,269,536,5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I) 순번 1 기재와 같이 AC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액 대비 100%인 3,207,000,000원에 투찰한 I도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재입찰 결과 2018. 5. 17.경 기초금액 대비 100%인 3,207,000,000원에 투찰한 I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AE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3,207,000,000원 상당의 위 『AX』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2019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Y, 기초금액 5,665,700,000원의 『AZ』 입찰이 공고된 후 위 L의 도



움을 받아 입찰절차를 진행하던 중 L으로부터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을 막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세울 것을 권유받고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주식회사 BA(이하 'BA'이라 한다)의 BB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BB은 사장인 BC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BB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2%인 5,779,013,99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I) 순번 2 기재와 같이 BA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액 대비 101%인 5,722,357,000원에 투찰한 I도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4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9. 1. 31.경 기초금액 대비 100.5%인 5,694,320,000원에 투찰한 I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C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5,665,700,000원 상당의 위 『AZ』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I

피고인은 위 가)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H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5) 피고인 J, 피고인 K

가) 피고인 J

피고인은 2019. 3.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D,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BE』 입찰이 공고된 후 K에 위 백신



을 공급하는 M의 L 팀장의 도움을 받아 위 입찰절차를 진행하게 되었는데 K의 입찰담당자인 BF 부문장을 통하여 위 L으로부터 '유찰 없이 K를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를 세우겠다'는 취지의 말을 전달받고 이를 승낙하였다.

이에 L은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주식회사 BG(이하 'BG'이라 한다)의 BH에게 연락을 하여 위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BH는 사장인 BI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위 BH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인 10,597,6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K) 기재와 같이 BG은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으며, 기초금액 대비 100.5%인 10,452,000,000원에 투찰한 K도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9. 3. 12.경 기초금액 대비 100.5%인 10,452,000,000원에 투찰한 K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L, BI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10,400,000,000원 상당의 위 『BE』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K

피고인은 위 가)항의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J가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6) 피고인 L, 피고인 M

가) 피고인 L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T' 관련 범행

(가) 2018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8. 5.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W, 기초금액 3,207,000,000원의 『AX』 입찰이 공고되자 M과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고 'T'를 국내에 유통하는 I³⁾을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의 입찰담당자인 H 부장에게 I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세울 예정임을 고지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AC의 AD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고, 위 AD는 사장인 AE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AD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5%인 3,269,536,5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M) 순번 1 기재와 같이 기초금액 대비 100%인 3,207,000,000원에 투찰한 I과 AC 모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재입찰한 결과, 2018. 5. 17.경 기초금액 대비 100%인 3,207,000,000원에 투찰한 I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AE, AD, H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3,207,000,000원 상당의 위 『AX』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2019년경의 범행

피고인은 2019. 1.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

3) M은 2017년까지 D를 통해 'T'를 국내에 유통하였으나, 2018년부터는 I을 통하여 'T'를 국내에 유통하는 것으로 변경하였다.



으로 하는 공고번호 AY, 기초금액 5,665,700,000원의 『AZ』 입찰이 공고되자 위 (가)항과 같이 I을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I의 입찰담당자인 H 부장에게 I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세우라고 권유하였고, 이에 따라 위 H는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BA의 BB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달라고 부탁하였으며, 위 BB은 사장인 BC에게 보고를 마쳤다.

이후 BB은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2%인 5,779,013,99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M) 순번 2 기재와 같이 기초금액 대비 101%인 5,722,357,000원에 투찰한 I과 BA 모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4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9. 1. 31.경 기초금액 대비 100.5%인 5,694,320,000원에 투찰한 I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C, H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5,665,700,000원 상당의 위 『AZ』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2) 폐렴구균 백신 'Y' 관련 범행

피고인은 2019. 3.경 조달청에서 발주한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D,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BE』 입찰이 공고되자 M과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고 'Y'를 국내에 유통하는 K을 단독응찰로 인한 유찰 없이 낙찰자로 선정시키기 위해 들러리 업체를 입찰에 참여시키기로 마음먹었다.

이에 피고인은 K의 입찰담당자인 BF 부문장에게 K의 낙찰을 위해 들러리를 세울 예



정임을 고지한 후 평소 알고 지내던 백신 도매상인 BG의 BH에게 들러리로 참여해 줄 것을 부탁하였고, BF은 J 본부장에게, BH는 사장인 BI에게 각 보고를 마쳤다.

이후 BH는 조달청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에 접속하여 위 입찰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이 확실시되는 기초금액 대비 101.9%인 10,597,600,000원에 투찰하였고, 개찰 결과 별지1 범죄일람표(M) 순번 3 기재와 같이 기초금액 대비 100.5%인 10,452,000,000원에 투찰한 K과 BG 모두 예정가격 초과로 탈락하였다.

이에 따라 2회에 걸친 재입찰 결과, 2019. 3. 12.경 기초금액 대비 100.5%인 10,452,000,000원에 투찰한 K이 1순위로 낙찰되었다.

이로써 피고인은 BI, J 등과 공모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기초금액 10,400,000,000원 상당의 위 『BE』 입찰의 공정을 해함과 동시에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나) 피고인 M

피고인은 위 가)항의 각 일시, 장소에서 피고인의 사용인인 L이 피고인의 업무에 관하여 위 가)항과 같이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입찰에 있어 낙찰자 등을 결정하여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하였다.

3. 인정사실

가. 피고인들의 지위

1) 피고인 B는 2017. 12.경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던 V 주식회사에서 지주회사로 분할, 상호 변경된 회사이고, 피고인 A는 2010년경부터 분할 전 구 V 주식회사의 제약 영업 사업부에서 근무하면서 질병관리본부에 대한营业을 담당하는 사람이다.



2) 피고인 D는 1991. 4. 26. 설립되어 백신 제제 제조 및 판매업, 의약품 도소매업, 원료의약품 제조 및 판매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C는 2015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의약사업부장 및 영업본부장으로 재직한 사람이다.

3) 피고인 G는 1969. 11. 1.경 설립되어 완제 의약품 제조업 등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E는 2017년부터 2018. 11.경까지 피고인 G에서 PHB(Public Health Business)팀에 근무하면서 입찰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고, 피고인 F는 2018. 11.경부터 2019. 11.경까지 피고인 E의 업무를 인수·인계 받아 PHB팀 입찰업무담당자로 근무한 사람이다.

4) 피고인 I은 1936. 6. 20.경 설립되어 의약품 등의 제조 및 판매 등에 관한 일체의 부대사업, 투자 및 수출입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H는 2007년경부터 피고인 I 병원유통부에서 유통관리업무를 담당한 사람이다.

5) 피고인 K은 1973. 9. 13. 설립되어 의약품 제조업 및 판매업 등에 관련된 부대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J는 M에서 근무하다가 2015. 7.경부터 피고인 K에서 전문의약품을 다루는 ETC 사업부와 백신사업부로 구성된 ETC 사업본부의 본부장으로 근무하고 있는 사람이다.⁴⁾

6) 피고인 M은 1969. 12.경 설립되어 의약품 화합물 및 향생물질 제조업 등에 관련된 일체의 사업을 영위하는 회사이고, 피고인 L은 피고인 M에서 2014년경부터 2020년경까지 백신사업부 영업 부서의 PIB(Procurement&Institution Business)팀 팀장으로 근무한 사람이다.

나.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및 폐렴구균 백신과 공동판매계약의 체결

4) K의 ETC 사업본부의 백신사업부는 M과 공동판매계약을 맺은 백신을 포함한 8종의 백신을 판매, 수급, 판촉, 유통하는 백신 전담부서이다.



백신을 제조하는 외국계 제약사들은 국내에 제품을 판촉, 유통할 조직을 확보하기 위하여 국내에 영업, 판매조직과 유통망을 갖춘 공동판매사와 일정 기간을 계약 기간으로 하여 각 제품의 판촉 및 유통에 대한 독점적인 권리를 부여하는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기도 하는데,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및 폐렴구균 백신과 관련하여서도 다음과 같은 공동판매계약이 체결되었다.

1)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

가) 사람유두종바이러스 백신은 자궁경부암을 유발하는 것으로 알려진 사람유두종바이러스(HPV, Human Papilloma Virus)의 감염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이하 'HPV 백신'이라 한다)으로서, 국내에 시판 중인 HPV 백신으로는 O(O) 업체가 제조하는 백신으로 HPV-6, 11, 16, 18형을 예방하는 HPV DR 백신(Q, Q Prefilled Syringe, 이하 'Q 백신'이라 한다), HPV DS 백신(CH, CH)과 S(S)가 제조하는 백신으로 HPV-16, 18형을 예방하는 AZ(T, T Prefilled Syringe, 이하 'T 백신'이라 한다)이 있다.

나) P는 ① 2007. 7. 1.경 계약 기간을 3년으로 하여 피고인 B와 Q 백신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7. 1.경 피고인 G와 계약 기간을 2019. 12. 31.까지로 하여 Q 백신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피고인 M은 ① 2015. 8. 26.경 계약 기간을 2015. 8. 26.~2017. 12. 31.로 하여 피고인 D와 T 백신 등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② 2018. 4. 20.경에는 계약 기간을 2018. 7. 1.~2020. 12. 31.로 하여 피고인 I과 T 백신 등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2) 폐렴구균 백신

가) 폐렴구균 백신은 폐렴구균(*Streptococcus pneumoniae*)에 의한 침습성



질환인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기 위한 백신으로서 O가 제조하는 백신으로 2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CI(CI, CI Prefilled Syringe), CJ(CJ)가 제조하는 백신으로 13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CK(CK, CK, 이하 'CK 백신'이라 한다), S가 제조하는 백신으로 10가지 폐렴구균 혈청형에 의한 폐렴구균 감염증을 예방하는 Y(Y, Y Prefilled Syringe, 이하 'Y 백신'이라 한다)이 있다.

나) 피고인 M은 2015. 6. 1.경 피고인 K과 Y 백신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고, 2018. 8. 1.경에는 계약 기간을 2020. 12. 31.로 하여 수정 및 개정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다.

다.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과 백신의 조달

1) 정부의 감염병 예방을 위한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IP)

가) 국가예방접종 지원사업(NIP)은 예방접종을 향상을 통하여 감염병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할 목적으로 특정 질환에 대한 예방접종을 국가가 지원하는 사업으로서 총 17여 종의 백신을 대상으로 선정하여 그 비용 전액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에서 지원하고 있다.

나) 보건복지부 산하 질병관리본부는 관련 법령에 따라 예방접종전문위원회 심의를 거쳐 NIP 대상 감염병과 백신을 고시하고, 예방접종의 실시기준 및 방법에 대한 권장사항을 정하며, NIP 관리지침을 작성하여 보건소와 위탁의료기관 등에 배포하고 있고, NIP 대상 백신의 안정적 수급을 위하여 매년 비정기적으로 백신 제조 수입업체를 대상으로 백신 수급 간담회를 개최하여 백신의 예상 수요량과 공급 일정을 공유한 후 매년 말 내지 그다음 해 초에 백신 제조 수입업체로부터 백신 국내 공급 계획을



회신 받아 적기에 백신이 공급되도록 NIP를 수행하고 있다.

2) NIP를 위한 백신의 조달 방식

가) 개관

(1) 정부는 NIP 시행의 일환으로 보건소 등 공공분야와 위탁의료기관 등 민간분야에 백신을 공급하고, 위와 같은 공급을 위한 백신의 조달은 조달청에서 수행한다.

(2) 위 수행 과정은 ①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의 구매방식과 수요 및 예산을 확정하여 조달청에 구매요청을 하면, ② 조달청이 경쟁입찰을 통해 ③ 낙찰업체와 계약을 체결하여 질병관리본부로 계약 결과를 통보하고, ④ 질병관리본부는 보건소 등에 계약내역을 통보하고 구매절차를 안내하는 방식으로 진행되는데, 특히 전자입찰의 방식으로 조달이 이루어지는 경우 그 구체적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나) 질병관리본부의 구매요청 및 예비가격의 작성

(1) 질병관리본부가 NIP 대상 백신의 수요 및 예산 등에 따라 조달청에 해당 백신의 구매요청을 하면, 조달청은 백신의 조달을 위하여 기초금액을 작성한다.

(2) 이후 조달청은 위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pm 2\%$ 범위 내에서 총 15개의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위와 같이 작성된 복수의 예비가격에 대하여 순서에 관계없이 임의로 1번에서 15번까지를 명기한 다음, 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서 이를 복호화(復號化)하여 보관 관리한다. 이때 복수예비가격 자체는 공개하지 않는다(조달청 내자 구매업무 처리규정 제30조 제1항 제2호).

다) 경쟁입찰⁵⁾의 진행

5) 백신 조달을 위한 경쟁입찰은 특정 질병에 작용하는 백신들을 구매대상 물품으로 지정하는 입찰인 '질병별 입찰'과 특정 백신 제품을 구매대상 물품으로 지정하는 입찰인 '제품별 입찰'로 구분되고, 위 경쟁입찰은 구체적으로



(1) 입찰

전자입찰자는 전자조달시스템을 통하여 입찰금액을 기재한 입찰서를 제출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6조 제5항). 이때 전자입찰자는 복수예비가격 번호 중에서 2개의 예비가격번호를 반드시 추첨하여야 한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제7조 제1항 제2호6)].

(2) 예정가격의 결정

위와 같이 전자입찰자가 입찰하며 선택한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4개를 선정하여, 해당 각 번호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예정가격을 결정한다[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 전자입찰특별유의서(조달청 고시 제2016-19호) 제12조 제1항7)].

(3) 낙찰자 선정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 방식으로, 예정가격 이하로서 최저가격 입찰자(가격 배점 70점)부터 계약이행능력(이행능력점수 배점 30점)을 심사하여 85점 이상인 경우 낙찰자로 선정된다[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42조 제1항, (계약예규)적격심사기준(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244호)8)].

라) 낙찰자와의 조달계약 체결

는 일반경쟁입찰 방식으로 진행된다.

- 6) 2016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조달청 고시이다. 위 고시는 이 사건 동안 조달청고시 제2017-13호, 제2019-21, 제2020-59호 등으로 수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가 시행 중이다(본문의 조항은 위 조달청 고시 제2016-19호부터 현재 시행 중인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에 이르기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 7) 2016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조달청 고시로, 위와 같이 이 사건 동안 수차례 개정되었으나 본문의 조항은 위 조달청 고시 제2016-19호부터 현재 시행 중인 조달청 고시 제2023-18호에 이르기까지 개정되지 아니하였다.
- 8) 2016년 당시 시행되고 있었던 예규이다. 위 예규는 이 사건 동안 기획재정부계약예규 제320호, 제353호, 제407호, 제445호, 제472호 등으로 수차례 개정되었고, 현재 시행 중인 예규는 제679호이다.



(1) 백신 조달 입찰의 낙찰자는 정부와 조달계약을 체결하게 되는데, 위 조달계약은 백신을 공급하는 범위와 방식에 따라 제3자단가계약방식(민간개별구매 방식)과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구분된다.

(2) 제3자단가계약방식은 각급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체의 요청이 아닌 조달청에서 판단·결정하여 일반경쟁 또는 수의시담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직접당사자(조달청과 조달계약업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인 수요기관(질병관리본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언제든지 직접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낙찰받은 조달계약업체가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만 백신을 공급하며, 위탁의료기관 등 민간분야는 낙찰에서 정해진 가격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백신 공급자로부터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한 후 정부 예산 등에서 그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방식이다.

(3) 반면, 정부총량구매방식은 정부가 특정 기간 사용될 필수접종 물량을 일괄 구매하는 방식으로, 정부가 특정기간 동안 사용될 물량을 일괄적으로 구매하여 백신비를 조달계약업체에 지원하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에서 실제로 NIP로 사용한 물량에 대해 조달계약업체로부터 환급받는 방식인 사후정산방식⁹⁾, 정부가 특정기간 동안 사용될 백신 물량을 일괄적으로 구매하고, 민간(위탁 의료기관)은 사전에 확보해둔 물량으로 NIP 목적으로 사용하면, 사용한 물량만큼 정부로부터 현물로 공급받는 방식인 사후현물공급방식¹⁰⁾으로 분류된다.

라. NIP에 따른 이 사건 각 백신의 조달 방식

1) HPV 백신(Q, T)

9) '고가형I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함

10) '고가형II 방식'으로 표현되기도 함



가) 질병관리본부는 2016. 6.경 HPV 백신을 NIP 대상 백신으로 지정하고, 백신의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하여 백신 제품별로 입찰을 구분해 진행하는 제품별 입찰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2016. 6. 20.경부터 조달계약업체와 조달계약을 체결하고, 각 기관별로 필요한 백신 수량은 조달계약업체를 통해 직접 요청하는 정부총량구매·사후정산방식으로 HPV 백신을 공급하기로 하여, HPV 백신은 2016년부터 2019년까지 경쟁입찰을 통하여 정부총량구매·사후정산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다) 그러나 질병관리본부는 2020. 11.경 조달청에 HPV 백신 중 Q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2020년부터 2023년까지 Q 백신은 아래 3)항 표 기재와 같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라) 한편, 질병관리본부는 2021. 2.경 조달청에 HPV 백신 중 T 백신에 대하여도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2021년에는 T 백신이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되었다가, 2023년 다시 T 백신에 대하여 정부총량구매방식의 경쟁입찰이 실시되었다.

2) PCV 백신(Y)

가)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경 PCV 백신을 NIP 대상 백신으로 지정하고, 백신의 조달단가를 개별 산정하여 백신 제품별로 입찰을 구분해 진행하는 제품별 입찰을 시행하기로 하였다.

나) 이에 따라 질병관리본부는 2014년경부터 제3자단가계약방식으로 PCV 백신을 공급하다가, 2017. 7. 19.부터 2017. 11. 15.까지 4차에 걸친 민관협의체 회의 및 2017. 12. 18.부터 2018. 3. 22.경까지 3차에 걸친 실무추진반 회의를 거쳐 민간 소량 구매에 따른 백신 공급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하여 2019. 1.경 PCV 백신에 정부총



량구매·사후현물공급방식을 도입하기로 하였고, 그 결과 2019년부터 2020년까지 PCV 백신은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공급되었다.

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2021. 2.경 조달청에 PCV 백신 중 Y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이에 2021년에는 Y 백신은 수의계약 방식으로 공급되었다.

3) 위와 같은 NIP 시행 후 이 사건 각 백신의 조달 방식 변천을 요약하면 다음 표 기재와 같다.

연도	HPV 백신		PCV 백신
	Q 백신	T 백신	Y 백신
2014	(NIP 시행 전)	(NIP 시행 전)	경쟁입찰(제3자단가계약)
2015	(NIP 시행 전)	(NIP 시행 전)	경쟁입찰(제3자단가계약)
2016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제3자단가계약)
2017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제3자단가계약)
2018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없음
2019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2020	수의계약	없음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2021	없음	수의계약	수의계약
2022	수의계약	없음	없음
2023	수의계약	경쟁입찰(정부총량구매)	없음

마. 2016년~2019년 HPV 백신, PCV 백신 입찰절차의 진행 경과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6년~2019년 HPV 백신, PCV 백신의 각 입찰 절차(이하 '이 사건 각 입찰'이라 한다)는 다음과 같이 진행되었는데(전체 입찰은 별지2에 순차로 정리되어 있다), 이 사건 각 입찰의 구매입찰 공고문에는 "본 입찰의 입찰자가 공급업체인 경우에는 개찰 후 5일 이내에 제출일 기준 1개월 내에 발급된 제조(수입)업체의



공급확약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여야 합니다. 개찰 후 5일 이내에 공급확약서를 공증받아 제출하지 못하면, 차순위자를 대상으로 입찰절차가 진행됩니다."라고 기재되어 있었다.

1) 2016년 Q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B)

가) 조달청은 2016. 5.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L, 기초금액 13,776,000,000원의 『CM』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나) 조달청은 2016. 6.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A, 기초금액 13,500,000,000원의 『AB』 입찰을 재공고하였고, 주식회사 CN(이하 'CN'이라 한다)이 기초금액 대비 100.80%, AC이 기초금액 대비 101.85%, 피고인 B가 기초금액 대비 98%로 투찰하여 피고인 B가 13,275,000,000원에 낙찰받았다.¹¹⁾

2) 2016년 T 백신 입찰(낙찰자: AH)

가) 조달청은 2016. 5.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O, 기초금액 3,327,000,000원의 『DV』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무응찰로 종료되었다.

나) 조달청은 2016. 6.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Q, 기초금액 4,008,750,000원의 『CR』 입찰을 재공고하여 CN이 기초금액 대비 101%, AI이 기초금액 대비 100.99%, AH이 기초금액 대비 100%로 각 투찰하였고 2016. 6. 10. 개찰 되었으나 적격심사 부적격으로 입찰절차가 완료되지 못하였다.

다) 조달청은 2016. 6. 15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F, 기초금액 4,008,750,000원의 『AG』 입찰을 재공고하였고, 해당 입찰은 1회차~3회차에서 각 예가초과(예정가격초과)로 유찰되다가, 제4회차 입찰에서 CS 주식회사(이하

11) 별지1 범죄일람표(B) 순번 1번



'CS'이라 한다)가 기초금액 대비 101.03%, AC이 기초금액 대비 101.98%, AH이 기초금액 대비 100%로 각각 투찰하여 AH이 4,008,750,000원에 낙찰받았다.¹²⁾

3) 2017년 Q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G)

조달청은 2017. 4.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O, 기초금액 20,186,300,000원의 『AP』 입찰을 공고하였고, 1회차 내지 3회차에 예가초과로 유찰되다가, 제4회차 입찰에서 AQ이 기초금액 대비 102%, 피고인 G가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하여 피고인 G가 20,186,300,000원에 낙찰받았다.¹³⁾

4) 2017년 T 백신 입찰(낙찰자: AH)

조달청은 2017. 3.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M, 기초금액 5,077,750,000원의 『AN』 입찰을 공고하여 AI이 기초금액 대비 102%, AH이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하여 AH이 5,077,750,000원에 낙찰받았다.¹⁴⁾

5) 2018년 Q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G)

조달청은 2018. 5.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S, 기초금액 11,980,000,000원의 『AT』 입찰을 공고하였고, 1, 2회차에서 예가초과로 유찰되다가 제3회차 입찰에서 AC이 기초금액 대비 101.9%, 피고인 G가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하여 피고인 G가 11,980,000,000원에 낙찰받았다.¹⁵⁾

6) 2018년 T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I)

조달청은 2018. 5.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W, 기초금액 3,207,000,000원의 『AX』 입찰을 공고하여 제1회차 입찰에서 예가초과로 유찰되

12) 별지1 범죄일람표(D) 순번 1번

13) 별지1 범죄일람표(G) 순번 1번

14) 별지1 범죄일람표(D) 순번 2번

15) 별지1 범죄일람표(G) 순번 2번



었다가, 제2회차 입찰에서 AC이 기초금액 대비 101.9%, I이 기초금액 대비 100%로 투찰하여 I이 3,207,000,000원에 낙찰받았다.¹⁶⁾

7) 2019년 Q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G)

가) 조달청은 2019. 1.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T, 기초금액 25,697,100,000원의 『CU』 입찰을 공고하여 2019. 1. 23.~2019. 1. 24. 4회차에 걸쳐 재입찰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나) 조달청은 2019. 1.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U, 기초금액 25,697,100,000원의 『AV』 입찰을 재공고하여 제1, 2회차에는 예가초과로 유찰되었고, 제3회차 입찰에서 AC이 기초금액 대비 101.96%, 피고인 G가 기초금액 대비 100.5%로 투찰하여 피고인 G가 25,825,800,000원에 낙찰받았다.¹⁷⁾

8) 2019년 T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I)

가) 조달청은 2019. 1.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V, 기초금액 5,665,700,000원의 『CW』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2019. 1. 23.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나) 조달청은 2019. 1. 24.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Y, 기초금액 5,665,700,000원의 『AZ』 입찰을 재공고하여 진행된 제1회차 내지 4회차 입찰에서 예가초과로 유찰되다가, 제5회차 입찰에서 BA이 기초금액 대비 102%, 피고인 I이 기초금액 대비 100.5%로 투찰하여 피고인 I이 5,694,320,000원에 낙찰받았다.¹⁸⁾

9) 2019년 Y 백신 입찰(낙찰자: 피고인 K)

16) 별지1 범죄일람표(I) 순번 1번

17) 별지1 범죄일람표(G) 순번 3번

18) 별지1 범죄일람표(I) 순번 2번



가) 조달청은 2019. 1.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X,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CY』 입찰을 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나) 조달청은 2019. 2.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CZ,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DA』 입찰을 재공고하였으나 단독응찰로 유찰되었다.

다) 조달청은 2019. 3.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D,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BE』 입찰을 재공고하여, 1회차 및 2회차에는 예가초과로 유찰되다가, 3회차에 이르러 BG이 기초금액 대비 101.9%, 피고인 K이 기초금액 대비 100.5%로 투찰하여 피고인 K이 10,452,000,000원에 낙찰받았다.¹⁹⁾

바. 공정거래위원회의 고발

검찰은 2020. 7. 30.경 공정거래위원회에 구 공정거래법 제71조 제3항에 의하여 피고인들을 고발할 것을 요청하였고, 공정거래위원회는 2020. 8. 4.경 피고인들이 NIP 수행을 위한 조달청의 백신 입찰 과정에서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을 방해하고 부당하게 경쟁제한을 초래하였다는 이유로 같은 법 제71조 제5항에 따라 같은 법 제66조 제1항 제9호를 적용하여 고발하였다.

사. 관련 사건의 진행 경과

1) 서울중앙지방법원 2019고합1073, 2020고합351(병합), 서울고등법원 2020노1053 판결

AQ, AC의 대표 AE은 2016. 6.경부터 2019. 1. 30.경까지 B, AH, G, I의 각 입찰담당 임직원과 공모하여 자신이 운영하는 위 두 회사를 각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A, 기초금액 13,500,000,000원의 『AB』, 공고번호 AF, 기초금

19) 별지1 범죄일람표(K) 순번 1번



액 4,008,750,000원의 『AG』, 공고번호 AO, 기초금액 20,186,300,000원의 『AP』, 공고번호AS, 기초금액 11,980,000,000원의 『AT』, 공고번호AW, 기초금액 3,207,000,000원의 『AX』, 공고번호AU, 기초금액 25,697,100,000원의 『AV』 입찰에 각 들러리로 참여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6. 4. 징역 2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12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20. 10.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2)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81, 2020고합516(병합), 서울고등법원 2020노1417 판결

AI의 대표 AJ는 2016. 6. 17.경부터 2017. 4. 7.경까지 BP(D 팀장), AK(AI 상무) 등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F, 기초금액 4,008,750,000원의 『AG』, 공고번호 AM, 기초금액 5,007,750,000원의 『AN』 입찰에 각 들러리로 참여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각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7. 23.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21. 1. 21.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3) 서울중앙지방법원 2020고합467 판결, 서울고등법원 2020노1887 판결, 대법원 2021도9667 결정

가) BA의 대표 BC는 2019. 1. 30.경 H, BB 등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AY, 기초금액 5,665,700,000원의 『AZ』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0. 8.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 및 4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21. 9. 8.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나) BG의 대표 BI은 2019. 3. 12.경 L, BH 등과 공모하여 보건복지부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D, 기초금액 10,400,000,000원의 『BE』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여 위계 또는 기타의 방법으로 위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는 범죄사실 등으로 2020. 10. 8.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3년 및 80시간의 사회봉사명령을 선고받았고 2021. 7. 24. 그 판결이 확정되었다.

4) 관련 행정, 민사 사건 등

이 사건 각 입찰과 관련하여, ① 피고인 B는 조달청장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소송(서울행정법원 2021구합59045),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소송(서울고등법원 2023누60812)을 각각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 ② 피고인 D는 2023. 10. 5.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 및 과징금납부명령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23누60447), ③ 피고인 K도 조달청장 등을 상대로 입찰참가자격제한처분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21누71740),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서울고등법원 2023누60867)을 각각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 ④ 피고인 G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및감면신청기각처분취소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며(서울고등법원 2023누60546), ⑤ 피고인 I도 공정거래위원회를 상대로 시정명령등취소 소송을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고(서울고등법원 2023누60614), ⑥ 대한민국은 2023. 12. 13. 피고인 B,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과 AC, AI, BG 등을 상대로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손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며 손해배상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현재 소송 계속 중이다(서울중앙지방법원 2023가합102415. 원고 1심 소가 19,867,759,767 원).



4.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

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위반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원심은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성'을 갖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기준 등에 관한 관련 법리를 설시한 후,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또는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는 '경쟁'이 존재하고,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하여 부당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이 법원은 원심과 달리 이 사건 공소사실을 모두 무죄로 판단하므로 원심의 판단은 그 취지만을 간략히 요약하여 기재한다. 이하 원심의 판단 부분을 인용하는 부분에서는 모두 같다).

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경쟁'의 존재

(1) 이 사건 각 입찰은 그 특수성에 기하여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구조가 아님

(가)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과 낙찰조건으로서의 공급확약서 발급 관련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 즉 ① 피고인 M, P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백신 유통업체들과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민간 병의원에 직접 제품을 판촉·유통할 조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의 판촉 조직과 전국적인 판매 유통망을 이용하기 위함이고, 공동판매계약을 통해서 백신 판매를 위한 특정한 유통 경로를 지정하거나, 국내에 유통될 백신의 공급분전부에 대해 '공동판매사'가 최종적인 유통업체가 되도록 할 목적에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것은 아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피고인 M이 체결한 각 공동판매계약서의 문언에 의하더라도, 공동판매사는 자신의 책임하에 계약제품을 판매하면 되는 것이고, 공동판매사만이 유통채널에서 최종 판매자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며, 백신 제조사가 공동판매사에 계약제품을 공급하고, 공동판매사가 제3의 업체를 통하여 계약제품을 시중에 유통하는 경우를 상정하고 있다고 봄이 상당한 점, ③ 실제로 2016, 2017년도 T 백신 입찰에서는 공동판매사가 아닌 AH이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D가 AH에 피고인 M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약서를 제공하였고, 2019년도 Y 입찰에서는 피고인 K이 DB, DC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기도 한 점, ④ 피고인 M에서 2020. 1. 22.자 회의를 통해 작성된 회의록에는 "공급확인서 요청 관련 M 기준 논의" 항목에 "PRICE: 전년도 낙찰금액(low limited)-Tender PTW(price to W/S), TPO: 요청 및 대상자 TPO 유/무, Time line(비즈니스 환경)"이 기재되어 있어 피고인 M에서도 공급확약서를 반드시 공동판매사에만 발급하는 것이 아니라, 내부적인 기준이 존재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입찰 대상 품목인 백신에 대하여 백신 제조사(또는 수입사)와 공동판매사 사이에 공동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기는 하나, 공동판매계약에 따라서 공동판매사만 낙찰을 받을 수 있다거나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볼 수 없다.

(나) 백신의 공급 방식 변경에 따른 경쟁의 존재 여부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백신 입찰에서의 공급방식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되었다고 하여 이 사건 각 입찰이 공동판매사만이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가 되어서 경쟁이 부존재하였다고 볼 수 없다.

①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의 공급 방식의



변경이 경쟁을 결정하는 본질적인 변화인지 여부

제3자단가계약방식과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차이에 관한 K 직원 BF의 검찰 진술서 등에 의하면, 제3자단가계약방식은 전체 사용물량 중 약 5~10%가량을 사용하는 보건소에서 소요되는 접종 물량에 대하여 입찰을 실시하고, 나머지 약 90~95%가량의 병의원 사용물량은 보건소 입찰결과에 따라 공급가격을 결정하는 방식으로, 병의원에 대한 백신 공급은 병의원이 필요량을 주문하면 공급사가 직접 병의원에 백신을 공급한 후 그 비용을 병의원으로부터 직접 수금하고, 병의원은 정부 예산 등에서 그 비용을 보전받게 된다. 반면 정부총량구매방식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들의 필요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물량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위 두 방식의 본질적인 차이는 백신의 구매 및 공급 방식에 있을 뿐이고, 위와 같은 공급 방식의 변경으로 입찰참가자격 및 낙찰자 지위를 받을 수 있는지 여부에 본질적인 차이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② 백신의 유통능력 관련

관련자들의 진술에 의하더라도 백신 유통업체가 반드시 자체 배송 시스템을 갖추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위탁방식을 통한 백신 유통이 가능한 것으로 보이고, 백신 유통을 위탁방식으로 한다면 반드시 낙찰업체가 전국 단위의 유통능력을 보유하고 있을 필요가 없고, 공동판매사들도 낙찰을 받아 자신들의 유통망을 통해서만 전국에 해당 백신을 공급한다는 의사로 참여하였던 것으로는 보이지 않으며,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도 위탁방식을 활용한 유통이 가능하므로 정부총량구매방식하에서 전국적인 유통능력을 갖추었는지 여부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낙찰자를 정하는 결정적인 요소라고 할 수 없다.



③ 수의계약을 체결함이 상당하다는 사정이 경쟁의 판단에 영향을 미치는지 여부

NIP 시행 단계에서 들러리 입찰을 통해서라도 빠르게 낙찰자가 결정되어야 했는지에 관하여 질병관리본부 직원 DK, DL의 원심 법정에서의 각 진술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입찰이 유찰되어 재입찰, 재공고입찰 이후 수의계약 형태로 계약이 체결된다고 하더라도 일정이 다소 촉박하기는 하나 HPV 백신에 대한 NIP 시행 전에 백신 조달계약 체결이 충분히 가능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2020년도에는 Q 백신 조달계약이, 2021년도에는 T 백신과 Y 백신 조달계약이 각각 수의계약 방식으로 진행되었고,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에 송부한 수의계약 요청사유서에는 '백신 제조사에서 단독으로 수입·공급하는 백신으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음'이라는 취지가 기재되어 있기는 하나, 이 사건과 동일한 공급구조를 가진 PCV백신인 CK 백신의 경우에는 2019~2021년도 경쟁입찰방식을 실시하였고, 2021년도 입찰이 유찰로 마무리되자 수의계약을 체결하였으며, 2022년도에는 경쟁입찰방식에 의하여 백신 조달업체가 선정되었는바, 이는 백신 수급상황 등 구체적 사정에 따라 조달방식을 달리 정할 수 있음을 의미하는 것이고, 일부 백신에 대해 수의계약으로 조달계약이 체결되었다는 사정만으로 제품별, 정부총량구매방식하에서는 경쟁이 존재할 수 없는 구조라고 단정할 수 없다. 이 사건 각 입찰의 경우, 입찰참가자격이 있는 자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로 성립하고, 2인 이상의 유효한 입찰이 없을 경우 재입찰을 실시하며, 그때에도 입찰이 성립하지 않으면 수의계약에 의하게 되므로, 당시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이 경쟁이 성립할 수 없는 것으로 생각하여, NIP 시행을 위하여 빠른 시간 안에 질병관리본부와 계약을 할 필요가 있었다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면서 투찰률을 동일하게 유지하거나 조금씩



낮추는 방식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식이 아니라 단독응찰을 통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되는 절차를 거쳐야 하였을 것이다.

④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산업무 관련

㉔ 피고인 B의 변호인은 2016년도 Q 백신에 대한 NIP 시행 당시, Q 백신 제조사인 O와 질병관리본부는 피고인 B가 민수시장(국가기관이 아닌 도매상 등 일반적인 유통채널을 통해 민간 병의원에 약품을 판매하는 시장)에서의 접종을 위해 입찰 전부터 시중에 유통해 왔던 Q 재고 물량을 활용하여 NIP에 의한 Q 백신 접종을 시행하되, 피고인 B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금을 정산하기로 협의하였고, 피고인 B가 기존에 민수시장에 공급한 Q 백신 물량을 NIP 백신으로 활용하기로 하였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낙찰업체가 되지 않을 경우에는 당초 Q 백신 공급 시점에 발급하였던 세금계산서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가산세 부과 위험도 존재하였으므로 낙찰업체는 피고인 B가 되어야 했는바, 이러한 세금계산서 발급의 문제를 고려해 보더라도 2016년도 Q 백신 입찰은 경쟁이 성립할 수 없었다고 주장한다. 또한 피고인 G의 변호인은 정부총량구매·사후정산방식에서 낙찰업체는 병의원에 Q 백신을 일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이후 NIP 접종분에 해당하는 Q 백신 대금이 확정되면 기존 민수용 Q를 공급하였던 업체가 음(-)의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하고, 보건소에 대해서 다시 NIP용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며, 기존 공급업체와 별도의 정산절차를 거쳐야 하는데, 영세한 규모의 도매상들이 이러한 정산절차를 이행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으므로 공동판매사만이 낙찰받을 수 있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㉔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기존에 공동판매사가 Q 백신을 민수시장에 유통하면서 병의원에 발급한 매출 세금계산서의 취소 주체가 해당 공동판매사가 되어야 했다고 하더라도, 보건소와의 관계에서 세금계산서를 다시 발급하는 주체가 반드시 해당 공동판매사가 되어야 하는 것은 아니고, Q 백신 입찰에서 낙찰업체로 선정된 업체가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라면, 제3의 업체가 다시 보건소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게 되는 점, '세금계산서 기재 내용과 거래당사자들의 부가가치세 신고내용 등에 의하여 거래 과정이 누락되거나 생략되지 아니하여 조세회피 사실이 없는 경우'에는 해당 세금계산서는 사실과 다른 세금계산서라 할 수 없고, 위와 같이 기존에 피고인 B가 병의원에 Q 백신을 공급하면서 발급한 세금계산서를 취소하고 새로운 낙찰업체가 보건소를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더라도 위법하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위 피고인들 및 변호인의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2) 이 사건 각 입찰 관계자들의 경쟁에 대한 인식

원심이 적법하게 채택·조사한 증거들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가 낙찰받을 가능성이 높았고, 피고인들, 도매상, 질병관리본부 직원 등 입찰 관계자들도 그렇게 인식하였다는 점은 인정되나, 동시에 그 판시와 같은 피고인들 및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각 인식에 따르면(그에 관한 구체적인 원심의 설시는 따로 인용하지 않음), 위 입찰 관계자들도 이 사건 각 입찰에 공동판매사가 아닌 다른 유통업체가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함을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입찰이 반드시 공동판매사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여서 입찰에 '경쟁' 자체가 부존재하였다고 인식하였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나)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부당한 경쟁제한적 효과의 발생

(1)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동기 및 경위

(가) 백신 업계에서는 백신 제조사와 백신 유통업체 사이에 기존에 백신을 공급하였던 거래관계가 있는 업체에만 공급확약서를 발급해주는 관행이 형성되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 각 입찰에 들러리 업체로 참여하였던 업체의 관계자들은 일관되게 검찰에서 '백신 입찰에서 들러리 입찰은 관행이다'라는 취지로 진술하였는데, 백신 제조사들의 공급확약서 발급 관행, 단독 응찰로 인한 유찰 방지 등의 사유로 백신 유통업체들 사이에서는 낙찰받을 의사 없이 특정 업체의 낙찰을 위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이른바 들러리 입찰에 대한 인식이 있었고, 이 사건 각 입찰에 있어서도 백신 유통업체들은 특별한 상황 설명 없이도 쉽게 들러리 참여를 요청할 수 있었다.

(나) 백신 입찰에서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는 예정가격인데,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에서 투찰을 하면서 선택한 복수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고, 입찰 참여 업체가 투찰을 하면서 선택하는 복수의 예비가격은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지므로, 피고인들 입장에서는 유찰에 따른 재공고입찰이 시행되어 기초금액이 하락하게 될 경우를 우려하여 백신 입찰이 유찰되지 않도록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할 만한 동기도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다) 질병관리본부가 백신 제조사와 협의를 거쳐 추정가격을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조달청이 기초금액을 결정하는 것이기는 하나, 최종적으로 낙찰자 및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것은 복수의 입찰업체들이 선택한 예비가격 및 이를 통하여 산출된 예정가격²⁰⁾이므로, 입찰 업체들의 투찰가격에 따라 최종 낙찰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예



정가격이 달라지고,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예정가격을 높임으로써 안정적으로 자신들이 투찰한 가격에 낙찰을 받아 수익을 극대화할 수 있었다.

(2) 이 사건 각 입찰에 제3의 업체가 낙찰받을 의사로 참여하였다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가) 낙찰예정사와 들러리 업체를 사전에 서로 합의하여 결정하고 이를 토대로 형식적으로 입찰에 참여하는 방법으로 합의를 실행하는 행위는, 입찰과정에서의 실질적인 경쟁 없이 1개 업체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킴으로써 입찰참가자들 간의 경쟁을 통하여 거래상대방, 거래조건 등을 결정하고자 한 경쟁입찰제도의 취지가 무력화되므로 해당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통하여 낙찰자가 결정될 가능성이 원천적으로 제한된다.

(나)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 즉 ① 2016년도 T 백신 입찰(공고번호: AF)에 참여하였던 백신 도매상 CS을 운영하는 BJ의 검찰 진술, ② 2020년도 Y 백신 입찰과 관련하여, 조달청에서는 2020. 5.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X, 기초금액 4,522,500,000원의 『BY』 입찰을 공고하였고, 주식회사 DN, 주식회사 DO, 주식회사 DF, 주식회사 DP가 입찰에 참여하였으나 예가초과 및 공급확약서 미제출로 유찰되었으며, 다시 2020. 5. 29.경 질병관리본부를 수요기관으로 하는 공고번호 BZ, 기초금액 4,522,500,000원의 『BA』 입찰이 재공고되자, 주식회사 DN이 기초금액 대비 99.989%, 피고인 K이 100%, 주식회사 DF이 100%로 각각 투찰하였으나, 1순위자로 선정된 주식회사 DN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고 피고인 K이 최종적으로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최종적인 낙찰자로 선정되었음이 확인되는바, 피고

20) 예정가격 이하의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고, 낙찰자의 투찰가격으로 계약금액(조달단가)이 결정되며, 조달단가에 유통비를 가산하여 위탁의료기관 백신비가 결정된다.



인 K 이외에 위 각 입찰에 참여한 다른 업체들의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은 통상의 들러리 업체들과 달리 99.989% 또는 100% 수준으로서 실제 낙찰받을 의사로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된 2016년도 Q 백신 입찰(공고번호 AA)에 참여하였던 CN, 2016년도 T 백신 입찰(공고번호 AF)에 참여하였던 CN, CS은 모두 들러리 업체가 아니고 실제 낙찰받을 의사로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 제3의 업체가 낙찰받을 의사로 참여하였거나 참여할 가능성이 존재하였음을 인정할 수 있다.

(3)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백신 가격 변동의 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가) 기록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 즉 ① NIP 대상 백신 조달가격 결정을 위한 가격요소로는, 실제 거래가격, 원가계산 등을 검토·결정하여 입찰개시일 전일까지 국가종합전자조달시스템(나라장터)에 공개하여 업체에서 투찰률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한 '기초금액', 나라장터 시스템상에 기초금액을 입력하면 기초금액의 $\pm 2\%$ 내에서 15개의 구간을 나누어 무작위로 생성된 복수의 '예비가격', 입찰 참여업체에서 투찰을 하면서 선택한 복수의 예비가격 중 가장 많이 추첨이 된 순으로 4개의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이 존재하는 점, ② NIP 대상 백신 조달가격 결정 과정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질병관리본부가 백신의 가격을 고려하여 추정가격 및 해당 백신에 대한 NIP 예산을 정하는 것일 뿐이고, 질병관리본부에서 조달청에 제출한 추정가격을 기초로 하여 입찰에 참여하는 업체가 가격 결정에 참고할 수 있도록 하는 기준인 '기초금액'은 조달청에서 결정하는 것이다. 질병관리본부는 백신 유통업체가 아닌 백신 제조사와 가격을 협의한 것으로 보이고, 사전에 가격에 대한 논의가 있었다고 하더라도 가격 결정의 최종적인 주체는 조달청이며, 경쟁입찰의 특성



상 입찰 참여업체의 투찰률에 따라 기초금액 $\pm$ 2% 수준의 가격변동 가능성은 여전히 존재하는 점, ③ 이 사건에서 문제된 9건의 입찰에서 기초금액 대비 98%의 투찰률로 낙찰받은 경우는 1건, 기초금액 대비 100%의 투찰률로 낙찰받은 경우가 5건, 100.5%의 투찰률로 낙찰받은 경우는 3건으로, 모두 기초금액에 근접하거나 그보다 높은 금액 수준에서 낙찰을 받았다. 결과적으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를 통해 예정가격을 높임으로써 피고인 회사들이 기초금액에 근접한 수준에서 낙찰받게 되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④ 예가초과로 낙찰자가 없이 유찰됨으로써 재입찰이 시행된 사례에서 피고인들의 투찰률 및 최종 낙찰금액과 관련하여 보더라도, 피고인들은 다음과 같이 투찰률을 조금씩 낮추거나 동일하게 유지하여 기초금액과 동일하거나 기초금액을 상회하는 금액으로 낙찰받은 점(이에 관한 원심의 상세한 설시는 따로 인용하지 않는다), ⑤ 피고인들의 주장과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에 공동판매사 이외에 참가할 사업자가 없었다면, 그 입찰은 당연히 유찰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피고인들은 스스로 낙찰자가 되기 위하여 들러리 업체들을 참가시켰다. 들러리 업체들이 형식적으로 참가함으로써 경쟁입찰의 외형을 작출하는 한편, 실질적으로는 피고인들만이 입찰에 참여하여 피고인들이 투찰한 가격으로 낙찰되는 것과 같은 효과를 발생시켰는바, 이는 단독응찰일 경우 재입찰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허용하도록 되어있는 관계 법령을 잠탈한 행위이다.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경쟁입찰의 외형을 작출함으로써 유찰을 방지하지 않았더라면 유찰 후 재입찰, 재공고입찰 또는 수의계약 과정에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고 할 것인 점 등을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를 통하여 피고인들은 실질적인 경쟁 없이 투찰가격으로 낙찰을 받은 반면, 공동판매사가 아닌 다른 백신 유통업체들은 유찰 후 재입찰 등의 절차에 참가하여 경쟁



을 할 기회를 제한받은 것이므로, 결국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경쟁이 감소하여 가격, 수량, 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었고, 나아가 입찰에 이르는 과정에서의 경쟁 자체도 제한되었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1) 당해 공동행위가 독점규제및공정거래에관한법률(이하 '공정거래법'이라 한다) 제19조 제1항이 정하고 있는 경쟁제한성을 가지는지 여부는 당해 상품의 특성, 소비자의 제품선택 기준, 당해 행위가 시장 및 사업자들의 경쟁에 미치는 영향 등 여러 사정을 고려하여, 당해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수량·품질 기타 거래조건 등의 결정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있는지를 살펴 개별적으로 판단하여야 한다(대법원 2002. 3. 15. 선고 99두6514 판결, 대법원 2012. 6. 14. 선고 2010두10471 판결 등 참조). 여기에서 실제로 합의에 가담한 사업자들이 합의가 없었더라면 서로 유효하게 경쟁할 수 있었는지 여부는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의사의 존부, 각 사업자들의 존재나 그들의 시장성파가 서로에게 경쟁압력 내지 경쟁상 제약으로 작용하는지 여부를 중심으로 판단하되, 각 사업자가 보유한 생산능력 및 기술력, 공급의 대체가능성 및 신규 시장진입 가능성, 시장의 구체적 현황 등의 사정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5. 7. 9. 선고 2013두26804 판결 등 참조).

(2) 특히 당해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외에 경쟁촉진적 효과도 함께 가져오는 경우에는 양자를 비교·형량하여 경쟁제한성 여부를 판단하여야 하는데, 경쟁제한적 효과는 공동행위에 가담한 사업자들의 시장점유율, 공동행위 가담 사업자들 사이의 경쟁제한의 정도 등을 고려하고, 경쟁촉진적 효과는 당해 공동행위로 인한



효율성 증대가 소비자 후생의 증가로 이어지는 경우를 포괄적으로 감안하되 당해 공동행위가 그러한 효과 발생에 합리적으로 필요한지 여부 등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대법원 2013. 11. 14. 선고 2012두19298 판결 등 참조).

나)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였는지 여부

이 사건 각 입찰이 공급확약서를 제출해야만 낙찰받을 수 있는 구조(낙찰조건)였던 점은 앞서 본 바와 같은바,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여러 사정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하여는 해당 백신의 공동판매사 아닌 제3의 업체가 위 각 백신의 제조사(또는 수입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실제적인 가능성을 상정하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따라서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둘러리 업체들을 비롯한 다른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1)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 및 낙찰조건으로서의 공급확약서 발급 관련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의 공급확약서 발급 가능성

이 사건 각 입찰 대상 품목인 백신에 대하여 백신 제조사(또는 수입사)와 공동판매사 사이에 아래와 같이 각각 공동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던바, 이와 같은 공동판매계약의 내용에다가 추가로 인정되는 아래와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백신 입찰에서 백신 제조사가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의사 내지 가능성은 없었던 것으로 보인다.

(가) 이 사건 각 공동판매계약의 내용



① 피고인 M과 피고인 D, 피고인 K, 피고인 I 사이에 체결된 각 공동판매계약(증거목록 순번 328-4, 334, 335, 336번)에는 공통적으로 '공동판매사'를 '계약지역에서 유통채널을 위하여 계약제품을 판매·판촉·유통할 수 있는 독점적 유통업자'로, '유통(Distribution)'을 '계약지역에서 제품을 유통하는 서비스'로, '유통채널'을 '계약지역 내의 모든 유통채널'로, '판촉(Promotion)'을 '계약지역에서의 보건의료전문가에 대한 판촉활동'으로 각 규정하고 있다.

또한 위 각 공동판매계약서에는 '당사자들이 달리 서면으로 합의하지 않는 한, 공동판매사는 계약지역에서 자신의 계산으로 유통채널을 위해 계약제품을 판매할 책임이 있다.', '공동판매사는 피고인 M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유통채널 및 계약지역에서 계약제품의 판매를 위한 단독 대리인의 선임을 하지 않는다. 단, 본 조항의 조건은 공동판매사가 통상적인 거래경로를 통하여 계약제품을 판매하는 것을 금지하지 아니한다.'라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② P와 피고인 B 사이에 체결된 공동판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124-1번)는 '공동판매사'를 '독점적 유통업자'로, '고객'을 '개인 및 공공 병원, 진료소, 의사 및 기타 의료 제공자'로, '신규고객'을 '정부기관(기존 공공시장 제외), 비정부기관, 기업, 학교 등 기관 고객을 의미하며, 사안별로 O의 동의를 얻어야 한다'고 각 규정하면서, '계약의 맥락상 적용 가능한 경우 "고객"에는 "신규고객"도 포함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③ P와 피고인 G 사이에 체결된 공동판매계약서(증거목록 순번 223번)에서는 '공동판매사'를 명시적으로 '독점적 유통업자'로 규정하지는 아니하였으나, 피고인 G를 공동판매사로 지정하는 이유로 '공동판매사가 백신에 대한 유통·판매



경험이 있는 점'을 기재하였고, P는 피고인 G가 P가 합리적으로 수용할 수 있는 설명 없이 고객의 합리적인 요청을 이행하지 않거나 거부하는 경우에만 2차 총판을 지정할 수 있도록 하였다.

④ 또한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서는 모두 공통적으로 '백신 제조업체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계약을 양도하거나, 공동판매계약에 따른 공동판매사의 중요 의무를 제3의 업체에 하도급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고, 특히 피고인 M의 각 공동판매계약서에는 '사전 서면 동의에 따라 제3의 업체에 하도급할 경우 공동판매사가 지켜야 하는 사항'까지 규정되어 있다.

⑤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의 내용에다가 아래 다.의 2)가), 나)항에서 상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은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입찰 관계자들의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에 관한 인식(공동판매사는 사실상 독점 공급권을 보유한다는 점)까지 고려하면, 이 사건 각 백신의 국내 공동판매사들은 해당 백신을 대한민국 내에서 사실상 독점적인 지위에서 유통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백신 제조사들의 공급확약서 발급에 대한 인식

위와 같은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의 내용 및 효과에 따라, 백신 제조사들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주는 것을 "위 계약의 위반"으로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① 2017. 9.경부터 4년간 피고인 M의 백신사업부 마케팅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DG는 원심에서 '2018년, 2019년 입찰에서는 이미 공동판매계약이 체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I이나 피고인 K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주었다. 만일 공동판매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다면 이는 계약을 깨는



것이다.'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7면), 2001. 8.부터 2021. 8.까지 피고인 M에 재직하면서 전문의약품 및 백신 영업 업무를 담당하였고, 2017. 4.부터 2021년까지 백신사업부 본부장으로 근무하였던 BW는 원심에서 '2016. 5. 12. 자신이 작성한 미팅 회의록(증거목록 순번 303번 18면 참조)은 당시 T 백신에 대해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이 처음 시행됨에 따라 실무적으로 발생할 수 있는 이슈를 피고인 M이 피고인 D 측과 논의한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당시 제3의 도매상이 입찰에 참여하여 1순위가 되더라도 그 도매상에게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면 공동판매계약 위반이 되기 때문에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D에 공급확약서를 줄 수밖에 없다는 내용이 논의되었고, 그에 따라 위 회의록의 "Check Point"에 "입찰에 제3의 도매상이 들어가면 계약상 문제. 공급확약서가 없음 확인"이라고 기재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 43면).

또한 BW는 원심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에서는 피고인 M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는 없다'고 진술하면서,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에서는 독점공급권을 보유한 공동판매사만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M 담당자들이나 공동판매사의 실무자들도 모두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면).

위와 같은 백신 제조사들의 인식에 따르면 위 백신 제조사들은 공동판매사에 이 사건 각 입찰을 위한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주는 것이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 "이행"의 연장선에 있다고 이해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바, 이와 반대로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 이외의 업체에 이 사건 각 입찰을 위한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줄 가능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것은, 백신 제조사들이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을 '위반'할 것을 상정하는



것이어서 그 자체로 자연스럽지 못하고,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공동판매사 이외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가 없었다는 점에서도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전제이다.

② 피고인 M이 내부적으로 공급확약서 발급 기준을 가지고 있어 위 기준에 따라 공동판매사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할 수 있었는지 여부에 관하여 본다.

기록에 의하면, 피고인 M의 2020. 1. 22.자 회의록에는 "공급확인서 요청 관련 M 기준 논의" 항목에 "PRICE: 전년도 낙찰금액(low limited)-Tender PTW(Price To W/S), TPO: 요청 대상자 TPO 유/무, Time line(비즈니스 환경)"이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피고인 M의 PIB팀 소속 직원 DD는 2020. 6. 15. 15:39경 BW, DE 및 피고인 L에게 "Y가 관련 재입찰 공동 2순위자 K과 DF의 공급확약서 요청 mail이 kr government-tender inbox에 수신이 확인되어 첨부 드립니다."라는 내용의 이메일을 보낸 점, 이에 BW는 같은 날 19:20경 "거래기록도 없는 주식회사 DF보다는 기존 거래관계를 유지하고 있고, 현재 계약상 저희 Y 백신 판매 업체인 K에 공급확약서 발행을 요청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라고 답장한 점, 피고인 L은 2020. 6. 17. 10:41경 DG, DE, BW에게 "관련 미팅에서 논의했던 조달 입찰 관련된 objective standard 3가지는 아래와 같다"면서 "PRICE: 전년도 낙찰금액(low limited)-Tender PTW(Price To W/S), TPO: 요청 대상자 TPO 유/무, Time line: 비즈니스 환경"이라고 기재한 이메일을 송부하였고, 이에 법무팀의 DH는 2020. 6. 18. 9:27경 "BW님과 논의하였고 주식회사 DF과의 거래는 해당 업체의 compliance concern으로 지양하기로 했습니다."라고 답장한 점은 인정된다.



그러나 이 사건 공소사실은 2019년도 입찰에 대한 것인데, 위와 같은 피고인 M의 회의는 2020년 입찰을 앞두고 이루어진 것이어서 이 사건 공소사실 이후에 있었던 회의 내용을 기초로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공동행위의 배경을 추론하는 것은 부자연스러울뿐더러(2020년 입찰에는 들러리가 존재하지도 않았다),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피고인 M은 2020년 이전에는 공급확약서에 대한 발급기준 없이 당연히 공동판매사(피고인 K)에게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온 것으로 보이며, 이 사건 공소사실 당시에 위와 같은 내부 논의 및 기준에 따라 피고인 K에 공급확약서가 발급되었다고 볼 수 있는 자료는 없다.

㉔ 위 "공급확약서 발급기준"과 관련하여 BW는 원심에서 '2020년 이전에는 피고인 M 사람들은 당연히 T 백신은 피고인 I에 가고, Y 백신은 피고인 K에 주는 것으로 알고 있었다. 계속 해왔던 파트너들(공동판매사를 의미한다)과 했었기 때문에 굳이 공급확약서 발급 기준은 없었다. 그런데 2020년 초에 마켓에서 백신 이슈가 있으면서 공급확약서 발급기준에 대해서 조금이라도 가이드라인을 문서화시키고 증빙을 해 놓자는 내부적 요청에 의해서 만들려고 하였다.'고 진술하면서(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 16면 참조), '공급확약서 발급기준은 당시 논의 중인 상황이었고, 완성된 것이 아니었다.'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3면), DG 또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5, 36면).

㉕ 또한 BW는 원심에서 '2020년 Y 입찰에서 1차 입찰 당시 "DN"이라는 업체가 최저가로 투찰하였으나, 피고인 M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해 최종적으로 낙찰자가 되지 못하였다. 2차 입찰에서 DN이 다시 입찰에 참가



하여 1순위가 되었고, DF과 피고인 K이 각각 2순위로 투찰하였으나 DN은 여전히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하였고, 당시 공동판매사였던 피고인 K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낙찰을 받았다. 피고인 M 입장에서는 당연히 피고인 K에게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는 상황이었지만, 발급기준을 세우자는 논의에 따라 위와 같이 이메일을 작성하고 회람을 돌린 것'이라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0~62면).

㉔ 한편 DH는 2020. 6. 18.자 메일에서 'Setting aside the standard discussion'이라는 문구를 기재한 후 위에서 본 바와 같은 내용으로 답장을 한 것인데, 이는 '기준에 관한 논의는 남겨놓고(제쳐두고)' 피고인 K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다는 것이므로, 당시 공급확약서 발급기준은 완성되지 않고 논의 중인 단계였다는 위 BW, DG 진술의 신빙성도 충분히 인정할 수 있다.

(2) 백신 공급방식의 변경과 공동판매사의 낙찰 필요성

(가) 위와 같이 백신 제조사들이 공급확약서 발급을 이 사건 공동판매 계약의 이행으로 인식하게 된 배경에는 백신공급 방식의 변경 또한 중요한 요소로 고려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이 사건 각 입찰은 HPV 백신(Q, T)에 대해서는 2016년부터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공급되었고, PCV 백신(Y)에 대해서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으로 공급되다가 2019년부터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공급방식이 변경되었다.

(다) 제3자단가계약방식은 앞서 보았듯이 각급 수요기관에서 공통적으로 필요로 하는 물품을 업체의 요청이 아닌 조달청에서 판단·결정하여 일반경쟁 또는 수의시담을 통해 연간 단가계약을 체결하고, 직접당사자(조달청과 조달계약업체)가 아닌 제3자의 입장인 수요기관(질병관리본부)이 조달청 종합쇼핑몰에서 언제든지 직접



계약업체에 납품을 요구할 수 있게 한 것으로서, 낙찰받은 조달계약업체가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만 백신을 공급하며, 위탁의료기관 등 민간분야는 낙찰에서 정해진 가격 등을 토대로 자율적으로 백신 공급자로부터 백신을 구매하여 접종한 후 정부 예산 등에서 그 비용을 보전받게 되는 방식이다. 통상적으로 보건소 등 공공분야에 공급되는 백신은 전체 사용물량 중 약 5~10%가량을 차지하고, 나머지 약 90~95%가량이 병의원 사용물량으로서 이는 입찰과는 관계없이 공동판매사가 영업·홍보 등을 통해 판매하는 영역이었다.

(라) 반면 정부총량구매방식은 보건소뿐만 아니라 병의원들의 필요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물량에 대하여 입찰을 진행하는 방식이다. 즉 아래에서 살피는 바와 같이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는 민간 병의원 공급 백신은 입찰의 대상이 아니고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에 따른 공동판매사의 이행 영역이었다. 그런데 백신 공급 방식이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민간 병의원 공급분까지 모두 입찰의 대상이 됨으로써 공동판매사가 직접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을 받아야만 하는 필요가 발생하였던 것이다. 이러한 백신공급 방식의 변경은 백신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들에게도 상당한 영향을 미칠 수밖에 없는 중요한 변화였던 것으로 보이고, 아래와 같은 원심 증인들의 증언 또한 이를 뒷받침한다.

(마) 원심 증인 BF(K 근무)도, '기존 제3자단가계약방식은 보건소 납품분을 가지고 입찰을 진행하는 부분이었고, 이는 전체 시장의 5% 정도 되는 부분이었으나, 2019년에 NIP 방식이 총량구매 현물공급 방식으로 변경되면서는 전체 100%에 대한 입찰로 바뀌었기 때문에 K이 가져갈 수밖에 없는 구조였다'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3, 14면), '보건소 납품분은 전체 사용량의 5% 정도



되는데, 보건소 납품분에 대해서만 입찰을 진행할 때는 (공동판매사가 아닌) 도매상들이 하였다'(위 녹취서 4면)고 진술하였다. 원심 증인 DL(당시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 근무. 2010년부터 NIP 사용 백신의 수급업무 담당)는 'Y 백신 관련 실무추진반 회의 가운데 2018. 1. 24. 열린 2차 실무추진반 회의에서는 '정부총량구매, 현물공급방식이 도입되면 도매상들은 매출규모가 감소되어 회사 경영이 어려워질 수 있다'는 문제가 제기되었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5면. 도매상 중 하나였던 DB는 당시 Y의 공동판매사였던 피고인 K에 '매출 없어지는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다. 증바 제80호증), '2018. 3. 22. 열린 3차 실무추진반 회의에는 의약품도매상 연합회인 DW협회와 그 구성원인 DB도 참석하였고, 그 논의결과로 '총량구매, 현물공급방식 시행 시, 도소매업체의 매출 감소에 따른 금융환경 조건의 변경으로 자금난 심화'가 기재되었고, 자신은 이러한 의견을 듣고 질병관리본부는 도매상의 매출보장 방안으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공동계약 방식은 피고인 K과 같은 국내 판매사가 중심이 되어 일부 도매상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방안을 의미한다'(위 녹취서 53면)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F의 진술 또한 같은 취지이다(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7~31, 49면 참조)]. 즉 정부총량구매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에 보건소 납품분이라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도매상들의 매출이 없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 하에 대책이 마련되었고, 이는 공급확약서 발급이 각 백신의 공동판매사들에게만 이루어질 것이라는 점을 당연한 전제로 한 논의였던 것이다.

(바) 나아가 백신이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공급되는 경우 보건소에서 사용되는 물량뿐만 아니라 나머지 병의원에서 사용되는 물량까지 포함한 전체 물량에



대하여 입찰이 실시되는 것인바, ① 종전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전체 사용물량의 대부분(90~95%)을 차지하던 병의원 공급분에 대하여 최종 공급자이자 독점 공급자의 역할을 하던 공동판매사들이 위 사용물량 전체(100%)에 대한 입찰이 실시되어 최종 공급자가 결정되는 상황하에서 이를 자신들이 아닌 제3의 업체가 낙찰받게 되는 상황을 감수할 아무런 사업적 유인이 없는 점, ② 원심도 인정하였듯이 피고인 M, P를 비롯한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백신 유통업체들과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목적은, 다국적 제약사들이 국내 민간 병의원에 직접 제품을 판촉·유통할 조직이 미흡하기 때문에 국내 유통업체의 판촉 조직과 전국적인 판매 유통망을 이용하기 위함이었던바, 위와 같은 목적하에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한 다국적 제약사들 입장에서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의 대상이 된 백신의 국내 공급물량 100%에 대하여 정부 입찰이 실시되어 전국적인 보급이 예상되는 상황에서 내부 검증 등을 통해 공동판매사로 지정한 업체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실질적인 유인도 없고, 만일 일방적으로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경우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을 위반하는 것으로 평가될 소지도 있었으며,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M의 담당자들의 인식 또한 그러하였던 점, ③ 실제로 정부총량구매방식의 도입 이후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사례도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의 백신 공급방식의 변경은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의 당사자들로 하여금 '공급확약서 발급을 통해 공동판매사로 하여금 낙찰받도록 하는 것'이 이 사건 공동판매계약의 실효적인 이행을 확보하는 방안이라는 점에 대한 공통된 인식을 갖도록 하는 중요한 요소였던 것으로 보인다.

(사) 원심 증인 BV(피고인 I의 약품사업본부 병원유통부 근무)은, 일반



도매상이 피고인 I(공동판매사)의 응찰가격보다 낮은 가격으로 응찰하여 낙찰을 받더라도 결국에 그 도매상은 독점판매권자인 피고인 I으로부터 T를 구매해서 조달을 하여야 하는 구조라고 진술하였는데(원심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이에 따르면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NIP 백신 전체 물량을 공급하게 되어 공동판매사의 해당 백신 매출에서 이 사건 각 입찰이 중요한 비중을 차지하게 된 상황에서, 일반 도매상은 공동판매사보다 낮은 가격에 투찰을 하여야 낙찰 가능성이 높아지고, 만일 제3의 업체가 낙찰될 경우 공동판매사가 그 업체의 낙찰가격보다 더 낮은 가격에 백신을 공급해주어야 그 업체가 이익을 남길 수 있게 된다. 그렇다면 공동판매사 입장에서는 제3의 업체에 백신을 공급하지 않는 것이 오히려 이득이고, 제3의 업체 또한 공동판매사가 제3의 업체의 낙찰가보다 저렴하게 백신을 공급해주는 것이 아니라면 입찰과정에 참여하지 않는 것이 마찬가지로 이득이 되므로, 결국 공동판매사가 독점공급을 하는 상황에서 현실적으로 제3의 업체가 입찰과정에 참여할 경제적 유인도 존재하지 않는다.

(3) 공동판매사 아닌 제3의 업체에 대한 공급확약서 발급 사례

(가) 위와 같은 백신 공급방식의 변경 이후에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는 찾아볼 수 없다.

① 이에 대해 원심 증인 BW는, 피고인 M에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기 전에 TPO(Third Party Oversight) 절차, ABAC(Anti Bribery And Corruption) 절차 등 광범위한 검증 과정을 거치기 때문에 수개월의 시간이 소요된다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 33면. 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 8, 20면도 동일한 취지이다), 아울러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 피고인 M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다른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는 없다고 진술하였으



며,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에서는 독점공급권을 보유한 공동판매사만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고, 증인을 비롯한 피고인 M 담당자들이나 공동판매사의 실무자들도 모두 그렇게 인식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면). 또한 앞서 DL, BF의 원심 증언과 같이 백신 공급방식 변경으로 인한 일반 도매상들의 반발을 잠재우기 위해 최대 5개 업체와 '공동계약'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이 제시되었고, 이러한 경위로 피고인 K은 2019년 Y 입찰에서 도매상인 DB, DC을 제외하여 공동계약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수행하기도 하였다.

② 이 사건 각 입찰에서는 제조사가 아닌 공급자는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고(입찰조건), 피고인들은 다국적 제약사의 국내 공동판매사였으므로, 제조사가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줄 의사가 없다면 결국 공동판매사만이 낙찰받을 수 있고, 이에 관한 예외는 상정하기 어렵다. 공급확약서의 제출은 낙찰조건이므로, 제3의 업체가 낙찰받기 위해서는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와의 협의를 거칠 수밖에 없는데, 이 사건에서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들은 제3의 업체에게 공급확약서를 내어줄 의사는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위와 같이 실제로 정부총량구매방식 변경 이후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한 사례도 확인되지 않는다. 나아가 위 BW의 진술 취지에 따르면이라도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려면 그 전에 해당 업체를 대상으로 검증절차를 마쳐야 하는데, 이러한 절차를 입찰 개찰 후 수일 내에 모두 마치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불가능해 보이므로(앞서 보았듯이 공급확약서는 개찰 후 5일 이내에 제출되어야 한다),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것은 현실적으로도 어려워 보인다.

③ 한편 2016년도 T 백신 입찰(공고번호: AF)에 참여하였던 백신



도매상 CS을 운영하는 BJ는 검찰에서 "D를 설득하면 M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다."라고 진술하기는 하였으나, BJ는 원심에서는 위와 같은 진술은 자신의 일방적인 추측이고, 그것을 뒷받침하는 객관적인 근거나 선례는 없다고 진술하였으므로(원심 증인 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면), BJ의 위와 같은 검찰 진술은 믿기 어렵다.

(나) 이 사건 각 백신에 관하여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것으로 볼 수 있는지 문제 되는 사례들도 살펴보기로 한다(이는 원심도 언급한 사례들이다).

① 2016년도, 2017년도 T 백신 입찰에서 공동판매사가 아닌 AH이 위 입찰에 참가하여 낙찰받은 뒤,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D가 AH에 피고인 M으로부터 발급받은 공급확약서를 제공하기는 하였다.

그러나 DG는 원심에서 '2017년 T 공동판매사 선정 절차와 관련하여 2017. 10. 16. 피고인 M 사무실에서 국내 제약사들이 직접 참석해 제안서를 발표하는 자리가 있었는데, 당시 자신도 참석하였고, 피고인 D의 경우에는 위 피고인의 임직원들뿐만 아니라 AH의 임직원들도 참여하였다. 피고인 D가 제출한 제안서에는 피고인 D와 AH의 조직, 실적, 현황 등이 모두 상세하게 소개되어 있었고, 피고인 D는 소아과 및 산부인과에 대한 유통채널을, AH은 이를 제외한 다른 영역(내과, 가정의학과 등)에 대한 유통채널을 각 담당하고 있는데, T 백신은 청소년부터 성인까지 폭넓게 접종하는 백신이기 때문에 양 회사가 같이 제안을 한 것이었다.'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4~49면), BW 또한 원심에서 '당시 자신의 입장에서 피고인 D와 AH은 같은 회사라고 생각했다. 피고인 M이 2015년에 T에 대한 공동판매사를 선정할 당시 피



고인 D 측 제안서에는 피고인 D뿐만 아니라 AH의 사업조직 및 유통채널 등도 함께 상세히 기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5, 16, 69, 70, 79면). 실제로 피고인 D와 AH은 위와 같은 공동판매사 선정 절차에서 제출한 제안서 말미에 'AH그룹으로서 공동판매사 선정 절차에 참여한다'는 취지를 명확히 밝히기도 하였다(증바 제64호증의 2, 65면).

위와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AH과 피고인 D는 'AH그룹'으로서 당초부터 공동판매사의 역할을 함께 수행할 의사가 있었던 회사들이었을 뿐만 아니라, 공급확약서의 발급 또한 피고인 D의 의사 및 협조하에 이루어진 것이므로, 이를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사례로 볼 수는 없다.

② 2019년도 Y 백신 입찰에서는 피고인 K이 DB, DC과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기는 하였다.

그러나 이는 앞서 본 바와 같이 백신 공급방식이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됨에 따라 일반 도매상들의 매출 감소를 염려한 질병관리본부의 제안으로 이루어진 것이고, 나아가 DG는 원심에서 '피고인 K과 공동수급체들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였는데, 이는 피고인 M이 피고인 K에 발급한 것이고, 만일 도매상들만 있었다면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지 않았을 것이며, 공동수급체로 참여한 도매상들은 피고인 K이 해야 할 유통 업무 중 일부를 담당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72, 78면 참조), 공동판매사인 피고인 K이 아니었다면 피고인 M이 위 입찰에서 위 공동수급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주었을 것으로 보이지도 아니하므로, 이를 공동판매사와 무관한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사례로 볼 수 없다[실제로 당시 공급확약서는 피고인 K 단독 명의로 발급되었다(공판기록 6권 3059면)].



(4) 당초 수의계약 진행 검토 및 이 사건 각 입찰 후 수의계약 실시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입찰은 당초부터 경쟁입찰이 아니라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하였고, 이 사건 각 입찰 이후에는 실제로 수의계약이 실시되었는바, 이러한 점에 비추어 보더라도 이 사건 각 입찰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는지 의문이다.

(가) 2014. 8.부터 2016년 말까지 질병관리본부 예방접종관리과에서 백신 수급업무를 담당하였던 DK는 원심에서 'NIP 시행 초기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는 조달청에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를 문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입사도 한 곳이었고, 공급업체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 자신들(질병관리본부)이 판단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조달청으로부터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공개입찰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 79, 80면). 이러한 DK의 진술은 조달청에서 거부하지 않았다면 이 사건 각 백신의 공급을 수의계약을 통해 진행하였을 것을 전제한 것이어서, 질병관리본부 또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이 가능하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지 않았음을 엿볼 수 있다.

(나) 질병관리본부는 2020. 2. 21. P,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M 등에 Q 백신, T 백신, Y 백신 등을 포함한 독점 공급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증바 제18호증의 1).

(다) 이후 질병관리본부는 ① 2020. 11. 조달청에 Q 백신에 대하여 수의계약의 체결을 요청하면서 'Q 백신은 P에서 단독(단일)으로 수입·공급하는 백신으



로 경쟁이 성립될 수 없음.'이라고 기재하였고(증가 제16호증의 2, 증바 제30호증), ② 2021. 2.경 조달청에 T 백신 및 Y 백신에 대하여도 동일한 취지로 수의계약의 체결을 요청하였다[증바 제19호증(T 백신), 증바 제30호증(Y 백신)]. 이에 따라 이 사건 이후인 2020년도에는 Q 백신 조달계약이, 2021년도에는 T 백신 및 Y 백신의 조달계약이 각 수의계약 방식으로 체결되었다.

(라) 검사는, T 백신은 일시적으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을 뿐, 다시 경쟁입찰 방식으로 전환되었으므로 수의계약 방식으로 위 각 백신의 조달이 이루어진 적이 있다고 하더라도 위와 같이 수의계약이 체결된 이유가 '경쟁제한성이 인정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볼 수는 없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가 2021. 2. T 백신 및 Y 백신에 대하여도 '경쟁이 성립할 수 없다'고 기재하여 수의계약 체결을 요청하였고, 실제로 수의계약이 체결되었던 점, 2023년 T 백신에 대하여 다시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입찰이 실시되기는 하였으나, 1차 입찰 시 공동판매사 아닌 업체가 낙찰받았다가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지 못하여 재공고입찰이 이루어졌고, 재공고입찰에서 T 백신의 당시 공동판매사였던 피고인 B가 낙찰받은 점(증가 제34, 35호증), 질병관리본부는 위와 같이 T 백신에 대한 입찰을 실시한 이후인 2023. 10. 24.경 P, 피고인 D, G, M 등을 상대로, T 백신, Y 백신 등에 대하여 '조달청과의 합동간담회 이후 국내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백신 중 경쟁입찰 중인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제조·수입사뿐만 아니라 공동판매사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방안 등을 추진 중이므로, 2024년도 조달구매 시 수의계약 체결을 희망하는지 여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달라'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한 점(증바 제85호증) 등에 비추어 볼 때, T 백신에 대하여



다시 경쟁입찰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이를 근거로 이 사건 각 입찰에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한다고 평가할 수는 없으므로,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5) 세금계산서 발급 및 정산업무 방식(Q 백신의 경우)

다음과 같은 사정을 고려하면, Q 백신에 대한 NIP 도입 당시 기존 민간 보유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정산 등의 문제로 인하여 사실상 피고인 B만이 2016년도 Q 백신 입찰의 낙찰자가 될 수 있음을 전제로 한 논의가 이루어졌던 것으로 보인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Q 백신 제조·수입사인 P와 사이에 위 백신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고, Q 백신이 NIP 대상 백신으로 지정되기 이전인 2007년경부터 국내 병의원에 Q 백신을 유통해 왔다. 이때 피고인 B는 각 병의원에 Q 백신을 공급하면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해 주고, 이후 각 병의원이 위 백신을 접종하여 사용하면 그때에 비로소 각 병의원으로부터 대금을 지급받는 방식으로 Q 백신에 관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관련 업무를 정산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나) 그런데 Q 백신이 2016년경 NIP 대상 백신으로 지정됨에 따라 질 병관리본부, P, 피고인 B는 Q 백신에 대한 NIP 시행 방식을 논의하였고, 피고인 B가 기존에 병의원에 공급해 두었던 Q 재고 물량을 활용하여 NIP 접종을 실시하기로 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2면).

(다) 그러나 위와 같은 방법을 선택하는 경우, 기존 병의원에 공급하였던 재고에 관하여는 피고인 B가 이미 각 병의원에 세금계산서를 발행해 주었기 때문



에 세금계산서상 '공급받는 자(각 병의원)'와 실제 '공급받는 자(국가)'가 달라지는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질병관리본부, P, 피고인 B는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각 병의원이 위 재고로 NIP에 의한 접종을 실시한 후 이를 관할 보건소에 등록하면, 피고인 B가 위 병의원에 발행해 준 세금계산서를 취소하는 내용의 수정세금계산서[이른바 "음(-)의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해당 보건소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해 주기로 협의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9~22면).

(라) 이러한 상황에서 2016년도 Q 백신 입찰에서 피고인 B가 낙찰받지 못한다면, 피고인 B가 이미 각 병의원에 발행해 주었던 세금계산서 및 위와 같은 협의에 따라 발행하게 될 수정세금계산서는 '실제로 재화 또는 용역을 공급하는 자가 아닌 자의 명의로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한 경우'에 해당하여 피고인 B가 가산세를 부과받게 될 위험이 존재하였고[구 부가가치세법(2017. 12. 19. 법률 제15223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60조 제3항 제3호 참조], 이에 따라 피고인 B는 질병관리본부에 '부가가치세법 위반의 문제가 있다'고 문제제기를 한 것으로 보인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마) 그럼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법률자문을 받아서 수정세금계산서 처리하는 부분 등이 크게 문제되지는 않는다.'고 답변하고(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면), 세금계산서 문제에 관한 위와 같은 협의를 유지하였다.

(바) 검사는, 조달업체가 독점공급업체와 기존에 민수로 공급한 백신에 관한 재고양수도 계약을 체결하여 재고를 양수한 후, 독점공급업체가 기존에 민수로 공급한 백신에 대해 발행하였던 세금계산서를 일괄 취소하고, 조달업체가 다시 병의원을 상대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는 방식이 가능하므로 피고인 B 외의 다른 업체들도



2016년도 Q 백신 입찰의 낙찰자가 될 수 있었다고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B는 대금을 지급받지 않은 상태에서 세금계산서를 먼저 발행하고 민간 병의원에 Q 백신을 공급하였다가, 이후 병의원이 Q 백신을 사용할 때마다 사용 물량에 대한 대금을 지급받아 왔으므로, 이 사건 무렵 피고인 B가 발행한 세금계산서에는 이미 대금을 지급받아 거래가 완료된 부분과, 아직 대금을 지급받지 못한 부분이 혼재되어 있었을 것이어서 일괄 취소가 어려울 것으로 보이는 점, 위와 같이 민간 병의원이 Q 백신을 보관하면서 그때그때 접종하는 방식이었으므로 각 병의원이 보유하고 있는 정확한 재고수량의 파악도 사실상 불가능할 것으로 보이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현실적으로 피고인 B 외의 다른 업체가 낙찰자가 되어 기존에 발급되었던 세금계산서나 대금 정산 문제를 처리할 수 있었을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검사의 위 주장은 이유 없다.

(6) Y 백신에 대한 공동판매계약의 범위에서 이 사건 각 입찰이 제외되는지 여부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M은 2015. 6. 1.경 피고인 K과 Y 백신에 대한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고, 2018. 8. 1.경 수정 공동판매계약을 체결하였는데, 각 공동판매계약서의 '전문' 및 '3. 서비스 범위'에는 '유통채널은 계약지역 내 소아과, 산부인과, 분만센터[정부 입찰(Government tender) 제외] 및 도매를 의미한다', '유통채널은 유통업자가 계약제품을 판촉 및 유통하는 계약지역 내의 소아청소년과 의원, 산부인과 의원, 분만센터 및 어린이병원을 의미한다. 단, 정부 입찰, 건강검진센터, 건강관리협회 및 단체예방접종물량(즉, 대학·회사가 후원하는 예방접종, 협동조합 등)은 제외한다. 유통채널은 당사자들 간의 상호 서면 합의에 따라 변경될 수 있다.'고 기재



되어 있다.

(나)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정에 의하면, 위 각 공동판매계약서의 '정부 입찰'을 독점공급권의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조항은 제3자단가계약방식을 염두에 두고 작성된 것으로서, 위와 같은 내용이 2019년도 이후의 정부총량구매방식에 따른 입찰에 대해서까지 적용되는 것으로 볼 수는 없다.

① BW는 원심에서 '2015년도 피고인 K과의 Y 관련 공동판매계약에 "정부 입찰(Government tender)은 제외한다"는 내용이 있는데, 이는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정부 입찰로 진행되던 공공분야에 대한 공급분을 제외한다는 의미'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면), BF 또한 원심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0~64면).

② DG 또한 원심에서 '이는 보건소 입찰을 제외한다는 의미로서 2018년도 공동판매계약(2018. 8. 1.자)에서도 공공분야에 대한 공급분은 독점공급권의 범위에서 제외되었는데, 위 공동판매계약 이후인 2019년에 정부의 NIP 백신 조달방식이 기존의 제3자단가계약방식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으로 변경되었다. 또한 T 백신의 경우 2016년 NIP 품목에 포함될 당시부터 정부총량구매방식이 도입되었고, 그에 따라 피고인 I과의 공급계약에서는 정부 입찰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1, 30, 31면). 그리고 실제로 위 DG의 진술과 같이 피고인 M과 피고인 I 사이에 2018. 4.경 체결된 T 백신 등에 관한 공동판매계약(증거목록 순번 336번)에 따르면, T 백신에 대하여는 정부 입찰을 제외한다는 내용이 포함되지 않은 채 계약이 체결된 바 있으므로(위 증거목록 순번 336번 3면 참조. "for T, all channels of the medical service market in the Territory"), 위와 같



은 증인들의 진술은 충분히 신빙할 수 있다.

다) 이 사건 공동행위로 부당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는지 여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하여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해당 백신의 공동판매사뿐이어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므로, 논리적으로도 피고인들의 어떠한 행위로 인하여 '경쟁이 감소'한다는 점을 상정하기는 어렵다.

나아가 이하에서는 구체적으로 이 사건 공동행위(들러리를 세우는 것)가 있었다고 하여 경쟁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 있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본다.

(1) 이 사건 공동행위로 경쟁이 감소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경쟁이 감소하였다고 볼 수는 없다.

(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은 업체만이 낙찰을 받을 수 있는 구조인데,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실제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우지 아니하였고, 제3의 업체가 실제로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였더라도 제3의 업체가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가 되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나) 원심에서 증인 BJ는, '2016년 T 첫 입찰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CS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찰을 했으나, 그



이후 구체적인 내역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인 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34면), 이러한 진술 또한 들러리 행위와는 무관하게 정부총량구매방식에서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가 낙찰받을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한 것으로 보인다.

(다) 아래 다.의 2) 가), 나)항에서 상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피고인들을 비롯한 이 사건 각 입찰 관계자들 및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은 모두 공통적으로 공동판매사와 무관한 업체가 낙찰자가 될 수는 없다는 생각을 전제로 하고 있었음을 엿볼 수 있다. 백신 제조사와 공동판매사와의 협의를 통해 제3의 업체가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낙찰자가 될 확률이 이론상 없다고 볼 수는 없지만, 그러한 경우에도 이는 그들의 의사에 기한 결과일 뿐 입찰에서의 경쟁의 결과가 아님은 물론이다.

(2)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가격 등 거래조건 변동 가능성이 존재하였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결국 들러리 유무는 해당 입찰이 '단독 입찰'로 인하여 유찰'될지 또는 '낙찰'될지 여부만을 결정할 뿐, 그 외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로 인하여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주거나 줄 우려가 있었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가) 예정가격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신 입찰에서 예정가격은 계약금액을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다. 그런데 예정가격은 입찰자들이 투찰하면서 추첨한 복수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각 예비가격번호에 대응하는 예비가격을 산



술평균하여 결정되고, 입찰자가 투찰을 하면서 추첨하는 복수의 예비가격은 조달청이 작성한 기초금액을 기준으로 정해진다. 즉, 예정가격은 입찰 참여업체들의 '투찰률'과는 무관하게 복수의 예비가격번호 중 가장 많이 '추첨'된 4개의 예비가격번호에 대응하는 각 예비가격을 산술평균하여 결정되는 것이어서, 결국 예정가격의 결정은 우연성에 좌우된다(들러리 업체들의 추첨행위 자체는 담합의 실질이 있는 행위가 아니다. 아울러 이에 따르면 '들러리 업체들이 높은 투찰률로 투찰을 함으로써 예정가격이 상향된다'거나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통해 예정가격을 높였다'는 취지로 실시한 원심의 판단에는 사실을 오인한 잘못이 있다).

② 아울러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 시에는 기한을 제외하고는 최초의 입찰에 부칠 때에 정한 가격 및 기타 조건을 변경할 수 없으므로[구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2019. 9. 17. 대통령령 제30078호로 일부 개정되기 전의 것) 제20조 제3항], 들러리 업체가 입찰하지 아니하여 유찰되고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실시되었다고 하더라도 기한을 제외하고는 예비가격 등 입찰조건이 최초의 입찰 시와 동일하였을 것이다. 이러한 상황이라면 들러리 업체의 입찰로 인해 유찰되지 않았더라도 들러리 업체가 입찰하지 않았을 때와 입찰조건이 변경되었을 것이라고 볼 수 없으므로, 결국 피고인들의 공동행위만으로 예정가격 등에 직접 영향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③ 이에 대하여 검사는 낙찰업체와 들러리 업체의 담합으로 들러리 업체가 투찰가격을 낙찰업체의 투찰가격보다 높게 기재함으로써 예정가격이 특정가격 이상으로 산정될 때까지 유찰시키는 방식을 이용하는 경우, 들러리를 세움으로써 예정가격을 높일 수 있다는 취지로 주장한다.



그러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예정가격은 우연성에 의하여 정해지는 것인바, 예정가격과 투찰가격과의 비교 결과 또한 마찬가지로 우연에 좌우되므로 들러리를 세우는 것과 예정가격을 높이는 것은 여전히 관련이 없는 점, 검사의 주장은 들러리가 없을 경우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었을 경우와 비교할 때 들러리를 세움으로써 최종적으로 계약금액을 높이는 결과가 된다는 취지로 보이는데,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2016년도 T 백신 입찰 당시 일반적인 입찰절차와는 달리 2차 유찰 이후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계속 경쟁입찰로 진행하는 등 수의계약 진행가능성을 배제하고 업무를 처리한 전력이 있는 데다가, 2019년도 T 백신에 대한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DOSE당 53,720원)가 이후 2021년 수의계약 체결 시 단가(DOSE당 53,720원) 및 2023년 경쟁입찰에서의 단가(DOSE당 53,720원)와 모두 동일하였던 점에 비추어 보면, 검사의 위와 같은 주장은 해당 공소사실에서 이미 과거의 사실로써 반증이 이루어진 주장에 불과하여 받아들일 수 없다.

(나) 투찰금액이 변동될 가능성이 있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들러리 업체와는 무관하게 일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급확약서의 제출이 낙찰조건이고,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신 제조·수입사들이 공동판매사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실제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이 사건 각 입찰은 종국적으로는 공동판매사의 투찰금액대로 낙찰될 수밖에 없다(들러리 업체 또는 제3의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최종 낙찰자가 될 수는 없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투찰금액에 영향을 줄 가능성이 있었다고 보기도 어렵다.

① DK는 원심에서 '백신 공급가격의 경우 제조사와 "이런 범위 안에서 조달이 나갈 것이다"라는 정도의 협의를 한다'고 진술하였는데(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이에 의하면 이 사건 각 입찰과 같은 백신 입찰의 경우 질병관리본부가 기본적인 가격 범위를 미리 설정하는 것으로 보인다.

② 이 사건에서 공동판매사들은 별지2 순번 8, 13을 제외하고는 입찰 차수와 무관하게 기초금액 대비 동일한 투찰률로 입찰에 참가하였고, 순번 8, 13의 경우에도 투찰률은 최대 0.6%p 정도의 차이만 있었을 뿐이다. 이에 대하여 피고인 I의 약품사업본부 병원유통부에서 근무하는 BV은 원심에서 '2019년 입찰²¹⁾에서 1~4차에 걸쳐 투찰가가 조금씩 낮아지는데, 이는 피고인 L의 가이드에 따라 "예가 초과"를 피하기 위해서 투찰가를 조정한 것'이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BV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0면), BF은 원심에서 '동일한 투찰률로 계속 투찰한 것은 다른 PCV 백신인 CK가 같은 투찰률로 낙찰받은 적이 있기 때문이고, 아울러 피고인 K이 독점공급권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굳이 투찰가를 낮출 필요도 없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16면).

③ 이에 대하여 검사는,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가능성이 낮은 경쟁업체가 입찰에 참여할 경우, 비록 위 업체가 최종 낙찰자로 선정될 가능성이 낮더라도 이와 관계없이 유찰 가능성이 발생하고, 이는 공동판매사가 투찰가격을 낮추도록 하는 경쟁압력으로 작용하므로, 이 사건 공동행위의 경쟁제한성이 인정된다고 주장한다.

21) 별지2 순번 13 입찰을 의미한다.



그러나 검사가 위와 같은 주장을 뒷받침하는 사례로 들고 있는 2023년 T 백신 입찰 및 2020년 Y 백신 입찰(2024. 5. 20.자 검사 제출 의견서 13면 참조)은 이 사건 공소 사실 기재 입찰이 아닐 뿐만 아니라,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 입찰 중 2016년도 T 입찰(별지2 순번 3~5)의 경우 AH은 들러리가 아닌 업체도 입찰에 참여하였음에도 입찰 내 내 기초금액 대비 동일한 투찰률(100.00%)로 투찰하였고, 이 사건에서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이 변동되었던 입찰인 별지2 순번 8, 13 각 입찰의 경우에는 들러리 업체가 있었음에도 오히려 기초금액 대비 투찰률이 낮아졌던 점 등을 고려하면, 검사의 주장과 같이 입찰과정에서 공동판매사가 들러리 아닌 업체로 인한 경쟁압력으로 인해 투찰가격을 낮출 것이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오히려 이 법원이 언급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예가 초과를 피하기 위해 투찰률을 조정하였다는 피고인들의 변소를 쉽사리 배척하기도 어렵다), 검사의 위 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다.

④ 한편 Q 백신의 경우 2020년 및 2022년에 각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DOSE당 60,200원²²⁾)는 2019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와 동일하였고(공판기록 6권 3459~3463면),²³⁾ T 백신의 경우 2021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 및 2023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증가 제35호증 참조)²⁴⁾가 모두 2019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DOSE당 53,720원)와 동일하였다(공판기록 6권 3465, 3466면).²⁵⁾ 나아가 Y 백신의 경우에도 2021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²⁶⁾는 2019년 경쟁입찰 시 낙찰단가 및 2020년 들러리 없이 진행된 경쟁입찰 시 낙찰단가(DOSE당 50,250원)와 동일하

22) DOSE당 60,200원 = 2020년 투찰금액 20,227,200,000원 ÷ 336,000DOSE
= 2022년 투찰금액 45,150,000,000원 ÷ 750,000DOSE

23) 2021년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

24) DOSE당 53,720원 = 2021년 투찰금액 3,115,760,000원 ÷ 58,000DOSE
= 2023년 투찰금액 537,200,000원 ÷ 10,000DOSE

25) 2020년에는 수의계약 또는 경쟁입찰이 진행되지 않았다.

26) DOSE당 50,250원 = 2021년 투찰금액 10,050,000,000원 ÷ 200,000DOSE



였다(공판기록 6권 3497~3504면). 이에 대하여 BF도 원심에서 '2020년도 Y 백신 입찰에서는 들러리가 없었으나 2019년과 동일한 가격으로 낙찰받았고, 2021년 수의계약 체결 시에도 똑같은 가격으로 체결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면). 이러한 사정들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은 들러리와는 무관하게 일정 금액으로 낙찰받을 의사를 가지고 이 사건 입찰에 참여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공급확약서는 낙찰조건이므로, 백신 제조사들이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 공급확약서를 발급하여 줄 실제적인 가능성을 인정하기 어려운 이상 종국적으로는 공동판매사의 투찰금액대로 낙찰될 수밖에 없는 것이 이 사건 입찰의 기본 구조이다(들러리 또는 제3의 업체가 낙찰받더라도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지 못한다면 이들은 최종 낙찰자는 되지 못한다). 결국 들러리 유무는 '단독 입찰로 인한 유찰' 또는 '낙찰' 여부를 결정할 뿐 그 외의 조건에 실질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었던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다) 유찰되어 수의계약으로 진행될 경우 계약금액이 낮아질 가능성이 있었는지 여부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문제 된 백신의 경우 이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가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와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백신 입찰에서도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로 보인다. 아울러 당시 NIP 사업 시행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를 꺼려했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 자체도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해석으로 보인다.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Q 백신의 경우 2020년 및 2022년에 각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DOSE당 60,200원)는 2019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와 동일하였고, T 백신의 경우 2021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 및 2023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가 모두 2019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DOSE당 53,720원)와 동일하였다. 나아가 Y 백신의 경우에도 2021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는 2019년 경쟁입찰 시 낙찰단가 및 2020년 들러리 없이 진행된 경쟁입찰 시 낙찰단가(DOSE당 50,250원)와 동일하였다.

② 2015. 1. 1.부터 2022. 9. 22.까지 경쟁입찰에 부처졌으나,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들을 살펴보면 기초금액과 계약단가가 동일한 경우가 14건, 기초금액보다 계약단가가 높아진 경우가 8건으로 확인되는바(증거목록 순번 89-1번), 결국 일반적인 백신 입찰의 경우 유찰로 인해 수의계약으로 진행되더라도 그 계약단가가 기초금액과 동일하거나 오히려 높아진 경우가 대다수로 보인다.

③ 위 기간 동안 유찰로 인하여 수의계약이 체결된 사례들 중 기초금액보다 계약단가가 낮아진 경우가 2건 존재하기는 하였다(증거목록 순번 89-1번). 그러나 이는 일반적으로도 예외적인 경우로 보일 뿐만 아니라 앞서 본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백신의 경우에는 이후 진행된 수의계약 체결 시의 단가도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와 동일하였던 분명한 사정이 인정되므로, 위 2건의 사례만으로 이 사건 각 백신에서 '유찰 후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가능성'을 논하는 것은 불합리하고 역사적인 사실에도 반한다.

④ 아울러 단독응찰일 경우 재입찰 등 일정 절차를 거쳐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이 허용되어 있더라도, 아래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는 일반적인 입찰과 달리 NIP 시행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계속 입찰절차를 진행시켜 백신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 측이 낙찰받도록 할 의도로 2차 입찰에서까지 유찰된 경우에도 수의계약을 진행하지 않고 그대로 3차 입찰로 나아가면서 빠른 낙찰을 종용하기도 하였는바, 이러한 상황이라면 수의계약 체결 시 계약금액이 낮아졌을 희박한 가능성까지 상정하면서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가격 변동 가능성을 피고인들에게 불리한 사정으로 반영하기는 더욱 어려워 보인다.

(3) 이 사건 공동행위로 인한 경쟁촉진적 효과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하여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 업체는 사실상 해당 백신의 공동판매사뿐이어서,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는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이고, 나아가 이 사건 공동행위(들러리를 세우는 것)가 있었다고 하여 경쟁이 감소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은 지금까지 언급한 바와 같다.

위와 같은 사정에다가, ① 이러한 사정하에서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가격경쟁을 통하여 보다 낮은 가격으로 낙찰될 가능성', '새로운 경쟁업체의 출현 기회' 등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② 이 사건 각 백신은 모두 NIP 대상 백신으로서 적시 공급이 매우 중요한 이슈였고(NIP 사업 차질은 당시 청와대까지 보고되는 이슈였음), 이러한 이유로 당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또한 당초부터 수의계약 체결 가부를 조달청에 문의하기도 하였고, 입찰 실시 이후에는 아래에서 상세히 언급하는 바와 같이 공동판매사들에 대하여 빠른 낙찰을 종용하기도 하였으며, 2차 유찰 이후에도 수의계약 없이 경쟁입찰을 통한 절차 진행을 고집하기도 한 점, ③ 피고인들을 비롯한 공동판매사, 다국적 제약사 관계자들은 위와 같은 배경하에서 빠른 낙찰을 통한 NIP 사



업의 원활한 진행을 위하여 이 사건 공동행위에 이르게 된 것으로 보이는 점 등까지 종합적으로 고려하면, 이 사건 공동행위는 입찰 절차를 통해 수차례 유찰되는 것을 방지하여 NIP 진행에 필요한 제반 비용을 절감하고 소비자 후생에도 부합하는 등의 효율성·공공성 증대 효과도 함께 가져옴으로써 경쟁촉진적 효과도 있었던 행위로 보인다.

라) 소결론

결국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가 들러리를 포함한 제3의 업체들과 실질적인 경쟁관계에 있었다거나 피고인들의 행위로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 어렵다. 따라서 피고인들의 행위가 구 공정거래법 제19조 제1항 제8호의 부당한 공동행위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나. 입찰방해의 점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입찰방해죄의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의 의미에 관한 법리를 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다음과 같은 사실 및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이 사건 각 입찰은 경쟁이 존재하는 유효한 입찰로서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라고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

가) 입찰이란 경쟁계약에 있어서 입찰시행자가 자유경쟁에 참가한 다수인으로 하여금 문서로서 계약의 내용을 표시하게 하여 가장 유리한 조건(가격, 자격 등)을



제시한 청약자와 계약을 체결(낙찰)하는 것을 말하고, 적격심사제란 국고의 부담이 되는 경쟁입찰에 있어서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의 순서대로 계약 이행능력을 심사하여 낙찰자를 결정하는 방법을 말한다. 입찰절차는 개찰 결과 예정가격 이하이면서 최저가격으로 입찰한 자 순으로 적격심사를 실시하여 적격심사 항목의 총점이 기준점수 이상일 경우 낙찰자로 선정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진다.

나) 이 사건 각 입찰은 전자입찰방식으로 진행되었는데, 각 입찰의 낙찰자 선정 방식은 '적격심사에 의한 낙찰자 결정'방식으로서, 가격 배점에 70점이 부여되어 있고, 조달청이 질병관리본부의 '추정가격'에 근거하여 '기초금액'을 설정하여 업체에 공개하면 계약 담당 공무원이 기초금액의 $\pm 2\%$ 의 범위에서 서로 다른 예비가격을 작성하고, 입찰참가자들이 복수의 예비가격 번호 중 2개를 추첨하여 가장 많이 추첨된 번호순으로 선정된 4개를 산술평균하여 결정된 예정가격에 기초하여, 예정가격 이하의 낮은 투찰가격을 제출한 업체가 낙찰되고, 낙찰자의 투찰가격으로 계약금액(조달단가)이 결정되므로 추정가격 범위 내에서 기초금액 $\pm 2\%$ 수준의 가격경쟁 가능성이 존재하는 입찰이다.

다) 이 사건 각 입찰은 백신 제조사가 아닌 백신 유통업체가 참여하는 입찰로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다. 그러나 ① 앞서 본 바와 같이 공동판매사만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던 것은 아닌 점, ②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는지 여부는 이 사건 각 입찰의 참가자격 조건이 아닌 점, ③ 공급확약서를 발급받는 문제, 백신 공급 시스템이 갖추어졌는지 등의 문제는 입찰을 진행하여 투찰가격에 따라 1순위자를 최종 선정한 다음의 문제이므로 이와 같은 문제가 입찰 자체의 유효성을 결정하는 것은 아닌 점, ④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할 수 있는 유통업체로서 공동판매사 이외에 전국 병의원에 공급할 수 있는 시스템이나 능력을 갖춘 경쟁업체들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볼 수 없는 점 등을 고려하면,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입찰에 참여한 행위는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서 가격 결정뿐만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봄이 상당하다.

라) 이 사건 각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하였던 업체들이 관련 재판에서 입찰 방해죄에 대해 유죄를 선고받아 확정되었음은 앞서 본 바와 같다.

마) 피고인들이 섭외한 업체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 들러리로 참여한 사실, 위 각 업체들은 현실적으로 낙찰받기 어려운 금액으로 입찰에 참여하였고, 유찰되지 않고 진행된 입찰절차에서 P와 피고인 M의 공동판매사들이 최종 낙찰받은 사실 등이 인정되는바,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경쟁입찰인 것처럼 가장한 이상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하였다고 봄이 상당하다.

2) 이 법원의 판단

가) 관련 법리

입찰방해죄는 위계 또는 위력 기타의 방법으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경우에 성립하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필요로 하지 않고, 여기서 '입찰의 공정을 해하는 행위'란 공정한 자유경쟁을 방해할 염려가 있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 즉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그 행위에는 가격결정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된다(대법원 2007. 5. 31. 선고 2006도8070 판결 등 참조).



나) 구체적 판단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면, 이 사건에서 피고인들의 행위로 인하여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가 발생하였다고 단정하기 어렵다. 그럼에도 입찰방해죄를 유죄로 인정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다.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1) 위에서 상세히 살핀 바와 같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최종 낙찰자로 선정되기 위해서는 백신 제조사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야 했는데, 사실상 공동 판매사만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을 수 있었는바, 이 사건 각 입찰은 위와 같은 구조적 특수성으로 인하여 공동판매사와 나머지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하였다고 보기 어렵고, 들러리 행위로 인하여 경쟁제한적 효과가 발생하였다고 보기도 어려우며, 가격 등 거래조건에 영향을 미치거나 미칠 우려가 존재하였다고 단정하기도 어렵다. 사정이 이러하다면, 이 사건 각 입찰은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이라는 전제가 성립하기는 어려운 입찰로 보일 뿐이고, 따라서 피고인들이 들러리 업체를 내세워 이 사건 각 입찰에 참여하였다 하더라도 이로써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상태를 발생시켰다고 보기 어렵다.

(2) 비록 입찰방해죄는 위태범으로서 결과의 불공정이 현실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요하는 것이 아니며, 그 행위에는 가격을 결정하는 데 있어서뿐 아니라 적법하고 공정한 경쟁방법을 해하는 행위도 포함되므로, 그 행위가 설사 동업자 사이의 무모한 출혈경쟁을 방지하기 위한 수단에 불과하여 입찰가격에 있어 입찰실시자의 이



익을 해하거나 입찰자에게 부당한 이익을 얻게 하는 것이 아니었다 하더라도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면 그 입찰가격으로서 낙찰하게 한 점에서 경쟁입찰의 방법을 해한 것이 되어 입찰의 공정을 해한 것으로 되었다는 것이 대법원의 확립된 판례이지만(대법원 1994. 11. 8. 선고 94도2142 판결 등 다수), 이러한 대법원 판례의 사안들은 입찰참가자들 사이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함을 전제로 이들이 출혈경쟁 방지 등의 목적하에 실질적으로는 단독입찰을 하면서도 경쟁입찰인 것 같이 가장하였다는 것이어서 이 사건 각 입찰과는 그 사실관계 및 평가를 달리한다. 즉, 이 사건 각 입찰은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애초부터 '공정한 자유경쟁을 통한 적정한 가격형성'을 전제하기 어려운 구조의 것으로서, 입찰방해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데에는 여전히 의문이 남는다.

다.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가 인정되는지 여부

1) 원심의 판단

피고인들은 원심에서도 이 부분 항소이유와 동일한 취지의 주장을 하였다. 이에 원심은 범죄구성요건의 주관적 요소인 '고의'의 판단 방법에 관한 법리를 실시한 다음,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되는 그 판시와 같은 사정들을 종합하여 보면 피고인들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가 낙찰받아 최종 백신 유통업체가 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고 하더라도, 이 사건 각 입찰 자체가 경쟁이 부존재한다거나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적정한 가격형성에 부당한 영향을 주는 것임을 몰랐다고 보기 어렵고, 오히려 들러리 업체를 세워 입찰에 참여하는 것이 위법함을 알면서도 기존의 관행을 만연히 답습하였던 것으로 봄이 상당하다는 이유로 피고인들의 이 부분 주장을 배척하였다(원심의 이 부분 실시는 별도로 인용하



지 않는다).

2) 이 법원의 판단

앞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들의 이 사건 각 입찰에서의 공동행위가 경쟁제한적 효과 및 입찰의 공정 저해라는 각 범죄의 객관적 구성요건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한 합리적 의심은 여전히 배제되지 않는다. 이하에서는 원심 및 이 법원이 적법하게 채택하여 조사한 증거들에 의하여 인정할 수 있는 다음과 같은 사정들을 고려하여, 피고인들에게 경쟁제한성 및 입찰의 공정 저해에 관한 고의가 합리적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는 정도에 이르렀는지에 관하여도 살펴보기로 한다.

가) 이 사건 각 입찰 관계자들의 인식

(1) 공동판매사(피고인들)의 인식

(가) 피고인 D의 직원 피고인 C는 검찰에서 '백신을 업으로 하는 업체들의 경우 공급확약서가 어떤 것인지 알기 때문에 피고인 D가 총판을 가지고 있는 T 백신에 대해 피고인 M으로부터 공급확약서를 받을 수 없다는 사실은 충분히 알 수 있다.'고 진술하였다.

(나) 피고인 G의 직원인 피고인 E 또한 검찰에서 '질병관리본부가 조달청을 통해 Q 백신에 대한 입찰을 실시하더라도 입찰에 참여할 회사는 국내 독점권을 사실상 보유한 피고인 G가 유일하였다'고 진술하였다.

(다) 피고인 I의 직원 BV은 검찰에서 '피고인 H와 구조적으로 우리만 할 수 있는 입찰인데 어떻게 해야 하는지 상의를 하다가 피고인 L에게 자문을 구했다.'고 진술하였다.

(라) 피고인 K의 직원 BF은 원심에서 '이 사건 입찰은 구조적으로 공



공동판매사(피고인 K, I)만이 낙찰받을 수 있는 입찰'이라고 진술하고,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유찰이 된 이후 질병관리본부에서 입찰 못 받은 것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질책성 내용들과 3차에서 반드시 마무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한편 BF은 앞서 본 바와 같이 원심에서 'Y 백신 관련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정부총량구매방식의 도입으로 인해 도매상들의 매출이 없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 이러한 논의를 지켜본 당사자의 입장에서 이 사건 각 입찰이 경쟁의 실질을 가진다고 생각하였을지 의문스럽다.

(마) DG는 원심에서 'T 백신은 저희(M)가 제품 수입업자이고, 저희는 피고인 I하고만 계약을 했기 때문에 경쟁을 할 수 없는 구조이다. 이미 답이 있는 입찰이다'라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G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1면), BW는 원심에서 '제품별·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에서는 독점공급권을 보유한 공동판매사만이 낙찰받을 수밖에 없었고, 자신을 비롯한 피고인 M 담당자들이나 공동판매사의 실무자들 모두 그렇게 인식하였다. T 백신이나 Y 백신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일반 도매상들이 서로 경쟁을 한다고 생각한 적은 없다. (이 사건 각 입찰이) 수의계약으로 가게 되면 아마 NIP 절차가 계속 딜레이되기 때문에 엄청난 압박이 왔을 것'이라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W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3, 90면).

(바) 그 밖에도 피고인들은 이 사건 변론과정에서 일치하여 이 사건 각 입찰은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하지 않았던 입찰이라고 일관되게 변소하고 있다.

(2) 일반 도매상들의 인식



(가) BJ는 원심에서 '2016년도 T 백신 첫 입찰 때는 구체적인 내용은 몰랐지만, CS에서 낙찰을 받을 수 있다는 가능성이 있다고 생각하고 투찰을 했으나, 그 이후 구체적인 내역을 안 다음부터는 내가 할 수 없다고 생각하고 높은 가격으로 투찰을 한 것'이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인 BJ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3, 34면), 위와 같은 진술 또한 피고인들의 공동행위와는 무관하게 정부총량구매방식의 입찰에서는 공동판매사가 아닌 업체가 낙찰받을 수 없다는 인식을 전제한 것으로 보인다.

(나) 또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2019년 Y 백신에 정부총량구매방식이 도입될 무렵 도매상 중 하나였던 DB가 Y 백신의 공동판매사였던 피고인 K에 '매출이 없어지는 등의 문제 등에 대한 우려가 큰 상황'이라는 의견을 전달하기도 하였고(증바 제80호증), 질병관리본부, 공동판매사, 도매상 등이 참여한 실무추진반 회의에서의 협의 내용 등을 고려하면, 일반 도매상들도 '정부총량구매 방식이 도입되면 기존에 보건소 납품분이라도 낙찰받을 수 있었던 도매상들의 해당 백신 매출이 없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위와 같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한 것인바, 결국 당시 일반 도매상들 또한 해당 백신의 공동판매사만이 공급확약서를 발급받아 낙찰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인식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인식

(1) 이 사건 각 백신 공통

(가) DK는 원심에서 'NIP 시행 초기인 2016년 질병관리본부 또한 조달청에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부를 문의하였는데, 그 이유는 수입사도 한 곳이고, 공급업체도 독점으로 공급하고 있어 자신들이 판단했을 때 공개입찰을 하는 게 의미가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러나 금액이 5,000만 원



이상이면 수의계약으로 진행할 수 없다는 취지의 회신을 받아 공개입찰로 진행하게 되었다.'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8, 79, 80면), 위와 같은 진술에 비추어 보더라도 당시 질병관리본부조차도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하여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한다고 인식하지는 아니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나) 위에서 본 바와 같이 질병관리본부는 2020. 2. 21. P, 피고인 D, G, M 등에 이 사건 각 백신을 포함한 독점 공급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 체결 가능 여부 및 시기 등을 확인하는 공문을 발송하였고, 이후 2020. 11. 조달청에 Q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의 체결을, 2021. 2.경 T 백신 및 Y 백신에 대한 수의계약의 체결을 각각 요청하였다.

(다) 아래와 같은 진술들을, 당시 질병관리본부가 2017. 1.경 HPV 백신 공급 관련 제조사 간담회를 하면서, 백신 공급사인 P, 피고인 M뿐만 아니라 백신 판매사인 피고인 B, D, G도 참석대상으로 정하기도 하였던 점(증바 제73호증) 등과 종합하여 보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또한 2016년 당시 조달청의 승인이 있었다면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하여 수의계약으로 진행하여도 무방하다고 생각할 정도로 실질적인 경쟁에 관한 인식은 없었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 각 백신에 대한 NIP 사업의 진행에 있어 각 백신 제조사뿐만 아니라 공동판매사의 역할도 매우 중요한 요소라는 점도 인식을 같이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① DK는 원심에서 '백신 수급이 제대로 되지 않아서 NIP가 제때 시작되지 못하는 경우, NIP 자체가 12세 이하 아이들에게 하는 예방접종 업무이기 때문에 아이들이 질병에 노출되어 감염병에 취약해질 우려가 있고, HPV 백신의 경우에도 여성청소년들이 성생활을 하거나 나중에 출산 무렵의 나이가 되었을 때 자궁경부암



에 걸린다든지 하는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리고 NIP 사업을 진행함에 있어 백신 수급에 문제가 생길 때는 해당 사안이 청와대까지 보고될 수 있다.'고 진술하였고(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4, 5면), DL 또한 원심 법정에서 동일한 취지로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 3면).

② 나아가 DK는 원심에서 'NIP에 사용되는 백신은 소수의 회사나 특정 회사가 독점적으로 제조 또는 수입하고 있기 때문에, NIP 사업에 사용되는 백신 공급에 대해서는 백신 제조 또는 수입회사가 협조하지 않으면 NIP 사업은 정상적으로 시행되기가 어렵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면), 'HPV 백신은 공급방식을 조금 변경하면서 수입사, 제조사 등과 협의를 하였다. 질병관리본부도 HPV 백신 관련하여 빨리 낙찰되기를 원한 것은 맞고, 제조사나 공동판매사에게 빠른 낙찰이 필요하다, 조달에 최대한 협조해달라고 요청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 83면)고 진술하였다.

DL 또한 원심에서 'NIP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해당 백신의 제조회사 또는 수입회사 및 국내 유통회사 사이에 NIP용 백신의 공급수량, 공급방식 등을 사전에 협의하는 등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 백신 제조업체 또는 수입업체(국내 유통업체 포함)와 수시로 주 3~4회씩 회의를 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면).

(2) Q 백신

(가) DL는 원심에서 위에서 본 바와 같이 'NIP 사업을 원활하게 시행하기 위해서는 질병관리본부와 해당 백신의 제조회사 또는 수입회사 및 국내 유통회사 사이에 긴밀한 협력이 필요하다'고 진술하면서, '피고인 B와도 백신 공급방식에 관하여



논의하였는데, 이는 P는 Q 백신을 수입만 할 뿐 유통을 하지는 않고, 그 유통은 피고인 B가 한다고 들었기 때문'이라고 진술하는 한편(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 7면), '피고인 B와 아무런 관계가 없는, 의사 연락이 되지 않은, 사전에 협의되지 않은 다른 업체가 입찰에 들어올 수는 없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16면).

DK 또한 '2016년에 Q 백신의 공급을 논의할 당시 Q 백신의 경우 피고인 B 독점으로 알고 있었다. 당시 Q 공급방안에 대해서 P뿐만 아니라 피고인 B와도 논의하였는데, 이는 P의 경우 직접 국내에 위 백신을 유통한 경험이 없어서 구체적인 공급방식에 대해서는 피고인 B의 의견이 필요했기 때문이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10면).

(나) DK는 원심에서 '조달청은 NIP 사업 시행을 1개월여 앞둔 2016. 6. 1. 2차 입찰을 공고하였으며, 공고된 개찰일시는 2016. 6. 10.이었는데, 위 개찰 결과 유찰이 되면 2016. 6. 20.에 HPV 백신에 대한 NIP 시행은 불가능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32면). 그런데 DL는 원심에서 '1차 입찰이 단독응찰로 유찰된 후 피고인 B 측에 2차 입찰은 꼭 유찰되지 않도록 진행해달라는 이야기를 했을 수도 있을 것 같고, 그 이야기 속에는 다른 업체를 들러리로 세워서 입찰에 들어와달라는 의미도 있기는 했다.'고 진술한 바 있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20, 21면). 이러한 제반 정황을 고려하면, 당시 DL가 피고인 B 측에 2차 입찰은 꼭 유찰되지 않도록 진행해달라고 말한 것은 정상적인 NIP 사업의 진행을 위해 사실상 들러리를 세우는 행위를 포함하여 반드시 유찰되지 않고 낙찰되도록 조치해 줄 것을 종용한 것으로 보인다.



(다) 위에서 본 바와 같이, Q 백신에 대한 NIP 사업이 처음으로 시행되며 피고인 B가 기존 병의원에 공급하였던 물량에 대한 세금계산서 및 대금 정산 문제가 발생하자, 질병관리본부는 피고인 B 외의 다른 업체가 2016년도 Q 백신 입찰에서 낙찰받게 되면 가산세 등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피고인 B가 각 병의원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행한 후 보건소에 대한 세금계산서를 새롭게 발행하는 방법으로 이를 해결하려고 하였는바, 이에 비추어 보더라도 질병관리본부는 2016년도 Q 백신에 대한 입찰에서 피고인 B만이 낙찰자가 될 수 있다고 생각한 것으로 보인다.

(3) T 백신

(가) DK는 원심에서, '일반적인 차원에서는 질병관리본부는 조달청에 입찰을 넘긴 후에는 더 이상 관여하지 않고, 입찰에는 누구든 들어올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하여, 마치 이 사건 각 입찰이 실질적인 경쟁이 존재하는 입찰이었던 것과 같은 취지로 진술하기도 하였다. 그러나 DK는 2016년 T 백신 입찰에서 백신 제조사인 피고인 M 및 공동판매사 측이 입찰에 참가하지 않아 유찰되자 곧바로 T 백신의 수량 및 단가를 조절하여, 단가를 기존의 DOSE당 57,160원에서 54,541원으로 삭감하였는데, '이는 무응찰에 대한 페널티로서 이에 대하여는 당시 질병관리본부장의 지시 까지도 있었던 상황이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7~70면). 당시 피고인 M의 국내 공동판매사가 피고인 D라는 점은 DK 또한 알고 있었으므로(앞서 본 바와 같이 AH과 피고인 D는 같은 공동판매사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였다), 위와 같은 '페널티'는 결국 피고인 M 및 피고인 D가 입찰하지 않은 것에 대한 페널티, 즉 '낙찰받을 수 있는 업체가 들어오지 않았기 때문'에 주어진 것인바, 이로부



터 질병관리본부 내부적으로도 T 백신에 대한 낙찰자는 피고인 M의 국내 공동판매사라는 인식이 있었음을 추단할 수 있다.

(나) 특히 2016년 T 백신 입찰에서 1차 입찰이 무응찰로 유찰되자 DK와 피고인 M 측의 DX이 회의를 하였고, 당시 DX이 발송한 2016. 5. 30.자 질병관리본부 미팅 보고 이메일(증바 제75호증)에는 "1-2차 입찰 후 수의 시담(수의계약)까지 진행하는 것으로는 6월 중순(13)일 시행이 불가하다는 판단으로 기존의 입찰 프로세스 따르지 않기로 함"이라는 기재가 있다.

이에 대하여 DK는 원심에서 '2차 유찰이 되더라도 일반적인 경우처럼 수의계약으로 가지는 않고, 입찰로 계속 진행하겠다는 취지'라고 진술하면서, '그 이유는 정부가 발표한 NIP 일정을 맞추기 위함'이라고 진술하였는바(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5, 86면), 질병관리본부는 NIP 일정을 맞추기 위해서라면 2016년 T 입찰에서는 일반적인 진행절차와 달리 계속하여 입찰을 진행하여 백신 제조사 및 공동판매사 측이 반드시 낙찰받도록 할 의도였음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질병관리본부 과장이었던 DY은 2016년 당시 T 백신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M 측에 유찰되지 않도록 꼭 입찰에 참가하라는 취지의 의사도 전달한 것으로 보이고(증바 제13호증 2면, 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0, 51면), DL 또한 2016. 4.경 AH의 담당자에게 T 백신의 공급방법을 유선으로 설명한 다음 관련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증바 제71호증).

(다) 아울러 Q 백신, T 백신에 대하여는 다음과 같은 공통적인 사정도 인정된다.

① Q 백신, T 백신에 대한 각 2016년도 입찰의 경우, 피고인 B,



AH 모두 최초 입찰부터 들러리를 세워 입찰에 참가한 것은 아니었다(Q 백신의 경우 최초 입찰은 단독응찰로 유찰되었고, T 백신의 경우 최초 입찰은 무응찰로 유찰되었다). 그런데 위에서 본 바와 같은 질병관리본부의 압박·독촉 등이 있었고, 이에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공동행위가 이루어진 것이다.

② 이후에 진행된 Q 백신, T 백신에 대한 각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입찰의 경우, 비록 공동판매사가 변경되기는 하였으나 여전히 위 각 백신의 제조사는 동일하였는바, NIP 사업 시행 초기에 보인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입장 및 태도 등을 고려하면, 여전히 2016년도 입찰과 동일한 환경에서 위 각 입찰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보인다(이후 진행된 2017년부터 2019년까지의 각 입찰에서 들러리 아닌 업체가 참여한 횟수 자체도 단 1회에 불과하다). DK 또한 원심에서 '2020년도와 2016년도 사이에 달라진 것은 백신 입찰에 대한 수사가 진행된 것 외에는 없다'고 진술하기도 하였다(원심 증인 DK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0면).

(4) Y 백신

(가) DL는 원심에서 '자신도 2019년 Y 백신 입찰과 관련하여 피고인 K이 당연히 조달업체로서 Y 백신의 공급을 담당할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하였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2면).

(나) 특히 앞서 본 바와 같이 Y 백신 관련 실무추진반 회의에서, 정부 총량구매방식의 도입으로 인하여 도매상들의 매출이 없어질 것이라는 공통된 인식하에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방안이 논의되었는데, DL는 원심에서 '질병관리본부는 도매상의 매출 보장 방안으로 공동계약 방식으로 조달계약을 체결하는 방안을 제시하였고, 그와 같은 공동계약 방식은 피고인 K과 같은 국내 판매사가 중심이 되어 일



부 도매상과 함께 공동수급체를 구성하여 낙찰을 받는 방안을 의미한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53면).

(다) 2019년 Y 백신 입찰의 경우, 1차 및 2차 입찰은 피고인 K이 단일 응찰하여 유찰되었고, 3차 입찰에서야 피고인 K과 BG이 참가하여 피고인 K이 최종적으로 낙찰을 받게 되었다. 이에 대하여 BF은 원심에서 '당시 1차 및 2차 입찰이 유찰된 이후 질병관리본부(DL)에서 입찰을 받지 못한 것과 관련하여 전화를 받았고, 전화를 통해서 어느 정도 질책성 내용들과 3차 입찰에서 반드시 마무리하라는 요청을 받았다.'고 진술하면서(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8, 9면), '질병관리본부 담당자의 연락은 3차 입찰에서 무조건 낙찰을 시키라는 압력이었다고 생각한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BF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42면). DL 또한 원심에서 '그러한 연락을 한 것 같고, 이는 사업시행 일정²⁷⁾을 위해서는 좀 빠른 낙찰이 필요하다는 취지였다.'고 진술하는 한편(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1면), '자신이 "빠른 낙찰이 필요하다"고 말한 취지에는 관행처럼 다른 업체를 참여시켜서라도 유찰되지 않도록 빨리 낙찰받으면 좋겠다는 의미도 내포되어 있었다.'고 진술하였다(원심 증인 DL에 대한 증인신문 녹취서 64면). 이에 BF은 2019. 3. 6. DL에게 '우려하시는 입찰 관련해서도 다음주 화요일 잘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라는 내용이 담긴 이메일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증바 제29호증의 1 참조). 즉 당시 2차 입찰까지 유찰되었으므로 일반적으로는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도 있었던 상황임에도 불구하고 질병관리본부는 오히려 단독 응찰을 하여 오던 피고인 K 측에 '3차에서 반드시 입찰을 마무리하라'는 의사까지 전달하였던 것이다.

27) 당시 Y 백신에 대하여는 2019. 4. 1. NIP 사업이 시행될 예정이었다.



다) 피고인들에게 부당한 경쟁제한 및 입찰방해의 고의가 있었는지 여부

(1) 앞서 본 이 사건 각 입찰 관계자들, 즉 공동판매사, 일반 도매상과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인식을 종합적으로 고려하더라도, 이들은 모두 이 사건 각 입찰에서 공동판매사와 다른 업체들 간에 실질적인 경쟁관계가 존재한다는 생각을 하지는 않았던 사실을 알 수 있다. 나아가 앞서 거듭 언급하였듯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백신 제조사가 아닌 공급자는 공급확약서를 제출하여야만 낙찰을 받을 수 있고(낙찰조건), 위에서 본 바와 같이 백신 제조·수입사는 공동판매사가 아닌 제3의 업체에는 공급확약서를 발급해 줄 의사가 없었던 것으로 보이므로, 제3의 업체가 공동판매사와 실질적으로 경쟁하여 낙찰자가 되는 것도 사실상 불가능하였다. 이러한 배경하에서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 또한 이 사건 각 입찰 절차 시행 이전에 조달청에 수의계약 체결 여부를 문의하기도 하였고, 피고인들 또한 이 사건 변론 전과정을 거쳐 당시 공동판매사 아닌 제3의 업체가 낙찰을 받는다는 것은 불가능하였다는 주장을 계속하고 있다.

(2) 이 사건에서 들러리 행위가 없었다면 재입찰 또는 재공고입찰이 이루어졌을 것으로 보이나, 앞서 본 바와 같이 그 경우에도 동일하게 공급확약서를 가진 공동판매사들인 피고인들이 기재한 금액대로 낙찰가가 결정될 뿐이어서 여전히 실질적인 가격 경쟁은 발생할 수 없다. 아울러 앞서 보았듯이 이 사건 각 입찰에서 문제된 백신의 경우 이후 체결된 수의계약에서의 단가가 경쟁입찰 시의 낙찰단가와 동일하였을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백신 입찰에서도 유찰 후 수의계약 진행 시 계약단가가 낮아지는 것은 오히려 예외적인 경우로 보이며, 당시 NIP 사업 시행 일정을 준수하기 위해 수의계약으로 진행하기를 꺼려했던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의 태도를 고려할 때, 수의계약으로의 진행 가능성을 상정하는 것 자체도 피고인들에게는 불리한 해석으로 보인



다.

(3) 이러한 사정하에서 이 사건 각 입찰 관계자들 모두 수의계약 체결을 당연히 고려할 정도로 입찰 절차에서의 경쟁에 관한 인식은 없거나 극히 미미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럼에도 당시 촉박하였던 NIP 사업 일정을 맞추기 위하여 질병관리본부 담당자들은 이 사건 각 백신의 공동판매사들의 담당자들에게 빠른 낙찰을 종용 내지 압박하였고, 그러한 종용 내지 압박의 와중에는 들러리를 세워서라도 입찰을 마무리하는 의사가 가감 없이 표시되기도 하였다. 즉 피고인들이 들러리를 세운 행위는 이 사건 각 입찰에서 실질적인 경쟁을 배제함으로써 공동판매사가 낙찰자가 되도록 하기 위함이 아니라 위와 같은 NIP 사업 대상 백신의 적시 공급의 필요성, 그에 관한 질병관리본부의 압박 내지 종용으로 인해 신속하게 입찰 절차를 마무리하기 위함이었던 것이 그 근본 배경 및 인식이라 할 것이다.

(4) 결국 이 사건에서는 피고인들에게 실질적인 경쟁을 제한하거나 낙찰가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다는 점 및 입찰의 공정성을 해한다는 고의가 있었음은 여전히 합리적인 의심의 여지 없이 증명되었다고 보기 어렵고, 달리 이를 인정할 증거가 없다. 이와 달리 판단한 원심판결에는 사실오인 내지 법리오해의 위법이 있고, 이를 지적하는 피고인들의 항소는 이유 있다.

라) 제도적 미비의 문제

피고인 A가 이 법원에 제출한 2023년도 국정감사 보건복지위원회 회의록(증가 제27호증)에 따르면, 당시 질병관리청장은 NIP 백신 입찰 담합과 관련하여 가장 문제가 되는 부분은 무엇인지 등을 묻는 위원의 질문에, '백신 총판 도매상이 (입찰에) 참여를 하면서, 특히 단독입찰인 경우에 그러한 문제들이 생긴 것으로 파악하고 있다.



업체하고의 간담회를 조달청하고 같이 실시를 해서 문제점을 파악했고, 업체 측에서도 백신 총판을 통한 수의계약도 가능하게 하도록 수의계약 범위 완화를 요청했다. 절차상 합리적으로 하기 위해 조달청과 협의를 하고 있고, 그런 것들이 개정이 되면 앞으로 훨씬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한다.'고 답변한 사실이 인정된다(증가 제 27호증, 78면 참조). 아울러 질병관리청은 2023. 10. 24.경 피고인 M, 피고인 G, 피고인 D를 포함한 백신 수입사 등에게 이 사건 각 백신을 포함하여 국내에 단독으로 공급하는 백신 중 경쟁입찰 중인 품목에 대해 수의계약을 체결하는 것으로 입찰 방식을 개선하고, 제조·수입사뿐만 아니라 독점계약판매유통업체(백신총판)까지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한다는 취지의 공문을 발송하기도 하였다(증바 제85호증 참조).

질병관리청장의 위와 같은 답변 취지, 질병관리청이 백신총판업체(이 사건에서의 공동판매사를 말한다)까지도 수의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제도 개선을 도모하는 사정 등에 비추어 보더라도, 질병관리청에서 파악하는 문제의 근본 원인도 결국 "수의계약이 아닌 입찰을 실시하고, 입찰이 실시된 경우 '단독입찰'이 되어 낙찰자가 결정되지 않았던 것"이며, 그 해결방안 또한 "업체 측의 수의계약 범위 완화 요청에 따라 절차상 합리화를 위해 조달청과 협의하고 있다."는 것인바, 이를 보더라도 피고인들의 이 사건 공소사실 기재와 같은 행위가 근본적으로는 이 사건 각 백신과 같이 독점 공급되는 백신들에까지 굳이 입찰을 진행하도록 한 제도적 미비의 문제는 아니었는지 고민할 필요가 있다.

5. 결론

그렇다면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은 이유 있으므로, 피고인들과 검사의 양형부당 주장을 비롯한 나머지 항소이유에 대한 판단을 생략한 채 형사소송법 제



364조 제6항에 따라 피고인들에 대한 원심판결을 모두 파기하고, 변론을 거쳐 다시 다음과 같이 판결한다.

[다시 쓰는 판결 이유]

1.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는 위 제2항의 "이 사건 공소사실의 요지" 기재와 같다.

2. 판단

가.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

위 제4항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나.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

위 제4항 "피고인들의 사실오인 및 법리오해 주장에 관한 판단"에서 본 바와 같이 피고인 A, 피고인 C, 피고인 E, 피고인 F, 피고인 H, 피고인 J, 피고인 L에 대하여 공정거래법위반죄 및 입찰방해죄가 인정되지 않는 이상, 법인의 사용인 또는 그 밖의 종업원의 범죄성립을 전제로 한 구 공정거래법 제70조는 위 피고인 B, 피고인 D, 피고인 G, 피고인 I, 피고인 K, 피고인 M에 적용될 수 없다. 따라서 위 피고인들에 대한 이 사건 각 공소사실은 각 범죄의 증거가 없는 때에 해당하므로 형사소송법 제325조 후단에 따라 위 피고인들에게 각 무죄를 선고한다.

3. 무죄부분의 공시

형법 제58조 제2항에 의하여 이 판결의 요지를 공시하기로 하여 주문과 같이 판결한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다.

재판장 판사 이창형 _____

 판사 남기정 _____

 판사 유제민 _____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별지1]

범죄일람표(B)

순번	공고 번호	수요 기관	품목	기초금액총액 (원)	입찰금액총액 (원)	투찰률 (기초금 액대비)	예정가격총액 (원)	투찰률 (예정가 격대비)	낙찰 업체	입찰일	입찰 회차	입찰참여 업체	입찰일	탈락사유 (기초금 액대비)	입찰금액총액 (원)	예정가격총액 (원)	탈락사유 (예정가격 대비)	공급 확약 자
1	AA	질병 관리 본부	AB	13,500,000,000	13,275,000,000	98%	13,400,235,000	99.07%	B	20160610	1회차	CN	20160610	100.80%	13,608,006,000	13,400,235,000	예가초과 (101.55%)	P유 한회 사
												AC	20160610	101.85%	13,750,000,000		예가초과 (102.61%)	
합계				13,50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범죄일람표(D)

순번	공고 번호	수요 기관	품목	기초금액총액 (원)	입찰금액총액 (원)	투찰률 (기초금 액대비)	예정가격총액 (원)	투찰률 (예정가 격대비)	낙찰 업체	입찰일	입찰 회차	입찰참여업체	입찰일	탈락사유 (기초금 액대비)	입찰금액총액 (원)	예정가격총액 (원)	탈락사유 (예정가격 대비)	공급 확약 자
1	AF	질병 관리 본부	AG	4,008,750,000	4,008,750,000	100%	4,036,520,650	99.31%	AH	20160621	1회차	AH	20160620	100.00%	4,008,750,000	3,998,798,350	예가초과 (100.25%)	(주)M
												CS	20160621	100.78%	4,040,000,000		예가초과 (101.03%)	
												CN	20160621	101.00%	4,048,735,000		예가초과 (101.25%)	
												AC	20160621	101.98%	4,088,000,000		예가초과 (102.23%)	
												AI	20160617	102.00%	4,088,924,000		예가초과 (102.25%)	
											2회차	AH	20160621	100.00%	4,008,750,000	3,991,752,950	예가초과 (100.43%)	
												CS	20160621	100.78%	4,040,000,000		예가초과 (101.21%)	
												AC	20160621	101.98%	4,088,000,000		예가초과 (102.41%)	
											3회차	AH	20160621	100.00%	4,008,750,000	3,972,801,600	예가초과 (100.90%)	
												CS	20160621	101.03%	4,050,000,000		예가초과 (101.94%)	
												AC	20160621	101.98%	4,088,000,000		예가초과 (102.90%)	
											4회차	CS	20160621	101.03%	4,050,000,000	4,036,520,650	예가초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100.33%)	
												AC	20160621	101.98%	4,088,000,000		예가초과 (101.28%)	
2	AM	질병 관리 본부	AN	5,077,750,000	5,077,750,000	100%	5,089,911,275	99.76%	AH	20170407	1회차	AI	20170407	102.00%	5,179,300,000	5,089,911,275	예가초과 (101.76%)	금M
합계				9,086,5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범죄일람표(G)

순번	공고 번호	수요 기관	품목	기초금액총액 (원)	입찰금액총액 (원)	투찰률 (기초금 액대비)	예정가격총액 (원)	투찰률 (예정가 격대비)	낙찰업체	입찰일	입찰 회차	입찰참여 업체	입찰일	탈락사유 (기초금 액대비)	입찰금액총액 (원)	예정가격총액 (원)	탈락사유 (예정가격 대비)	공급 확약 자
1	AO	질병 관리부	AP	20,186,300,000	20,186,300,000	100%	20,332,196,525	99.28%	G	20170413	1회차	G	20170412	100.00%	20,186,300,000	20,038,233,525	예가초과 (100.74%)	P유 한회 사
												AQ	20170412	102.00%	20,590,000,000		예가초과 (102.75%)	
											2회차	G	20170413	100.00%	20,186,300,000	20,148,955,400	예가초과 (100.19%)	
												AQ	20170413	102.00%	20,590,000,000		예가초과 (102.19%)	
											3회차	G	20170413	100.00%	20,186,300,000	20,175,449,900	예가초과 (100.05%)	
												AQ	20170413	102.00%	20,590,000,000		예가초과 (102.05%)	
											4회차	AQ	20170413	102.00%	20,590,000,000	20,332,196,525	예가초과 (101.27%)	
2	AS	질병 관리부	AT	11,980,000,000	11,980,000,000	100%	11,988,356,050	99.93%	G	201800517	1회차	G	20180516	100.42%	12,030,000,000	12,026,871,750	예가초과 (100.03%)	P유 한회 사
												AC	20180516	101.95%	12,213,610,000		예가초과 (101.55%)	
											2회차	G	201800517	100.00%	11,980,000,000	11,933,906,950	예가초과 (100.39%)	
												AC	201800517	101.90%	12,207,620,000		예가초과 (102.29%)	
											3회차	AC	201800517	101.90%	12,207,620,000	11,988,356,050	예가초과 (101.83%)	
3	AU	질병 관리부	AV	25,697,100,000	25,825,800,000	100.5%	25,830,468,000	99.98%	G	20190130	1회차	G	20190129	100.50%	25,825,800,000	25,768,794,950	예가초과 (100.22%)	P유 한회 사
												AC	20190130	101.96%	26,200,000,000		예가초과 (101.67%)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2회차	G	20190130	100.50%	25,825,800,000	25,607,288,675	예가초과 (100.85%)	
												AC	20190130	101.96%	26,200,000,000		예가초과 (102.31%)	
											3회차	AC	20190130	101.96%	26,200,000,000	25,830,468,000	예가초과 (101.43%)	
합계				57,863,4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범죄일람표(I)

순번	공고 번호	수요 기관	품목	기초금액총액 (원)	입찰금액총액 (원)	투찰률 (기초금 액대비)	예정가격총액 (원)	투찰률 (예정가 격대비)	낙찰 업체	입찰일	입찰 회차	입찰참여 업체	입찰일	탈락사유 (기초금 액대비)	입찰금액총액 (원)	예정가격총액 (원)	탈락사유 (예정가격 대비)	공급 확약 자
1	AW	질병 관리 본부	AX	3,207,000,000	3,207,000,000	100%	3,214,239,850	99.77%	I	20180517	1회차	I	20180516	100.00%	3,207,000,000	3,201,027,000	예가초과 (100.19%)	(주)M
												AC	20180516	101.95%	3,269,536,500		예가초과 (102.14%)	
											2회차	AC	20180517	101.90%	3,267,933,000	3,214,239,850	예가초과 (101.67%)	
2	AY	질병 관리 본부	AZ	5,665,700,000	5,694,320,000	100.5%	5,699,439,300	99.91%	I	20190131	1회차	I	20190130	101.00%	5,722,357,000	5,657,796,400	예가초과 (101.14%)	(주)M
												AC	20190130	102.00%	5,779,000,000		예가초과 (102.14%)	
												BA	20190130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2.14%)	
											2회차	I	20190130	100.70%	5,705,359,900	5,653,731,275	예가초과 (100.91%)	
												BA	20190130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2.22%)	
											3회차	I	20190130	100.70%	5,705,359,900	5,695,020,050	예가초과 (100.18%)	
												BA	20190130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1.47%)	
											4회차	I	20190131	100.56%	5,697,500,000	5,662,782,225	예가초과 (100.61%)	
												BA	20190131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102.05%)	
											5회차	BA	20190131	102.00%	5,779,013,990	5,699,439,300	예가초과 (102.05%)	
합계				8,872,7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범죄일람표(K)

순번	광고 번호	수요 기관	품목	기초금액총액 (원)	입찰금액총액 (원)	투찰률 (기초금 액대비)	예정가격총액 (원)	투찰률 (예정가 격대비)	낙찰 업체	입찰일	입찰 회차	입찰 참여 업체	입찰일	탈락사유 (기초금 액대비)	입찰금액총액 (원)	예정가격총액 (원)	탈락사유 (예정가격 대비)	공급 확약 자	
1	BD	질병 관리 본부	BE	10,400,000,000	10,452,000,000	100.5%	10,456,680,000	99.96%	K	20190312	1회차	K	20190312	100.50%	10,452,000,000	10,388,248,000	예가초과 (100.61%)	㉞M	
												BG	20190311	101.90%	10,597,600,000		예가초과 (102.02%)		
											2회차	K	20190312	100.50%	10,452,000,000	10,376,392,000	예가초과 (100.73%)		
												BG	20190312	101.90%	10,597,600,000		예가초과 (102.13%)		
											3회차	BG	20190312	101.90%	10,597,600,000	10,456,680,000	예가초과 (101.35%)		
합계				10,400,0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범죄일람표(M)

순번	공고 번호	수요 기관	품목	기초금액총액 (원)	입찰금액총액 (원)	투찰률 (기초금 액대비)	예정가격총액 (원)	투찰률 (예정가 격대비)	낙찰 업체	입찰일	입찰 회차	입찰참여 업체	입찰일	탈락사유 (기초금 액대비)	입찰금액총액 (원)	예정가격총액 (원)	탈락사유 (예정가격 대비)	공급 확약 자
1	AW	질병 관리 본부	AX	3,207,000,000	3,207,000,000	100%	3,214,239,850	99.77%	I	20180517	1회차	I	20180516	100.00%	3,207,000,000	3,201,027,000	예가초과 (100.19%)	(주)M
												AC	20180516	101.95%	3,269,536,500		예가초과 (102.14%)	
											2회차	AC	20180517	101.90%	3,267,933,000	3,214,239,850	예가초과 (101.67%)	
2	AY	질병 관리 본부	AZ	5,665,700,000	5,694,320,000	100.5%	5,699,439,300	99.91%	I	20190131	1회차	I	20190130	101.00%	5,722,357,000	5,657,796,400	예가초과 (101.14%)	(주)M
												AC	20190130	102.00%	5,779,000,000		예가초과 (102.14%)	
												BA	20190130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2.14%)	
											2회차	I	20190130	100.70%	5,705,359,900	5,653,731,275	예가초과 (100.91%)	
												BA	20190130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2.22%)	
											3회차	I	20190130	100.70%	5,705,359,900	5,695,020,050	예가초과 (100.18%)	
												BA	20190130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1.47%)	
											4회차	I	20190131	100.56%	5,697,500,000	5,662,782,225	예가초과 (100.61%)	
												BA	20190131	102.00%	5,779,013,990		예가초과 (102.05%)	
5회차	BA	20190131	102.00%	5,779,013,990	5,699,439,300	예가초과 (102.05%)												
3	BD	질병 관리 본부	BE	10,400,000,000	10,452,000,000	100.5%	10,456,680,000	99.96%	K	20190312	1회차	K	20190312	100.50%	10,452,000,000	10,388,248,000	예가초과 (100.61%)	(주)M
												BG	20190311	101.90%	10,597,600,000		예가초과 (102.02%)	
											2회차	K	20190312	100.50%	10,452,000,000	10,376,392,000	예가초과 (100.73%)	
												BG	20190312	101.90%	10,597,600,000		예가초과 (102.13%)	
											3회차	BG	20190312	101.90%	10,597,600,000	10,456,680,000	예가초과 (101.35%)	
											합계				19,272,700,0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별지2]

순번	공고번호	기초 금액 (단위:천원)	입찰 순번	참가업체	투찰 시간	투찰률 (기초금액 대비)	낙찰 업체
2016년도 Q							
1	CL	13,776,000	-	-	입찰개시 20160524 10:00:00 개찰일시 20160526 13:00:00	-	유찰 (단독 응찰)
2	AA	13,500,000	1회차	B	20160610 08:29:11	98.00%	B
				CN	20160610 09:15:45	100.80%	
				AC	20160610 11:12:59	101.85%	
2016년도 T							
3	CO	3,327,000	-	-	입찰개시 20160525 10:00:00 개찰일시 20160527 13:00:00	-	유찰 (무응찰)
4	CQ	4,008,750	-	AH	20160610 11:37:58	100.00%	적격심사 부적격
				CN	20160610 09:18:11	101.00%	
				AI	20160610 09:08:59	100.99%	
5	AF	4,008,750	1회차	AH	20160620 11:40:38	100.00%	AH
				CS	20160621 10:38:18	100.78%	
				CN	20160621 09:08:38	101.0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AC	20160621 09:44:57	101.98%	
				AI	20160617 11:09:28	102.00%	
			2회차	AH	20160621 13:15:48	100.00%	
				CS	20160621 13:13:48	100.78%	
				AC	20160621 13:24:22	101.98%	
			3회차	AH	20160621 14:06:09	100.00%	
				CS	20160621 14:06:44	101.03%	
				AC	20160621 14:30:57	101.98%	
			4회차	AH	20160621 15:25:43	100.00%	
				CS	20160621 15:28:56	101.03%	
				AC	20160621 15:20:36	101.98%	
2017년도 Q							
6	AO	20,186,300	1회차	G	20170412 18:16:58	100.00%	G
				AQ	20170412 10:38:52	102.00%	
			2회차	G	20170413 13:19:19	100.00%	
				AQ	20170413 13:31:08	102.00%	
			3회차	G	20170413 16:06:55	100.00%	
				AQ	20170413 16:21:14	102.00%	
			4회차	G	20170413 17:39:52	100.00%	
				AQ	20170413 18:25:23	102.00%	
2017년도 T							
7	AM	5,077,750	-	AH	20170407 16:40:06	100.00%	AH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AI	20170407 15:09:45	102.00%		
2018년도 Q								
8	AS	11,980,000	1회차	G	20180516 09:36:41	100.42%	G	
				AC	20180516 16:49:07	101.95%		
			2회차	G	20180517 13:49:53	100.00%		
				AC	20180517 14:36:58	101.90%		
			3회차	G	20180517 15:50:42	100.00%		
				AC	20180517 16:50:24	101.90%		
2018년도 T								
9	AW	3,207,000	1회차	I	20180516 11:16:06	100.00%	I	
				AC	20180516 16:56:11	101.95%		
			2회차	I	20180517 13:55:14	100.00%		
				AC	20180517 14:39:09	101.90%		
2019년도 Q								
10	CT	25,697,100	-	-	입찰일시 20190121 12:00:00 개찰일시 20190123 13:00:00	-	유찰 (단독 응찰)	
11	AU	25,697,100	1회차	G	20190129 11:14:52	100.50%	G	
				AC	20190130 09:32:27	101.96%		
			2회차	G	20190130 13:41:34	100.50%		
				AC	20190130 14:05:48	101.96%		
			3회차	G	20190130 16:27:21	100.50%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AC	20190130 16:18:43	101.96%	
2019년도 T							
12	CV	5,665,700	-	-	입찰개시 20190121 12:00:00 개찰일시 20190123 13:00:00	-	유찰 (단독 응찰)
13	AY	5,665,700	1회차	I	20190130 09:13:17	101.00%	I
				AC	20190130 09:30:17	102.00%	
				BA	20190130 08:14:09	102.00%	
			2회차	I	20190130 15:27:04	100.70%	
				BA	20190130 13:48:31	102.00%	
			3회차	I	20190130 16:49:30	100.70%	
				BA	20190130 16:34:00	102.00%	
			4회차	I	20190131 09:18:18	100.56%	
				BA	20190131 08:20:29	102.00%	
			5회차	I	20190131 11:06:42	100.50%	
				BA	20190131 11:08:13	102.00%	
2019년도 Y							
14	CX	10,400,000	-	-	입찰개시 20190211 12:00:00 개찰일시 20190213 13:00:00	-	유찰 (단독 응찰)
15	CZ	10,400,000	-	-	입찰개시 20190219 12:00:00	-	유찰 (단독 응찰)



본 판결서는 판결서 인터넷열람 사이트에서 열람·출력되었습니다. 본 판결서를 이용하여 사건관계인의 명예나 생활의 평온을 해하는 행위는 관련 법령에 따라 금지됩니다. 비실명처리일자 : 2024-08-02

					개찰일시 20190221 13:00:00		
16	BD	10,400,000	1회차	K	20190312 11:39:35	100.50%	K
				BG	20190311 16:25:53	101.90%	
			2회차	K	20190312 13:16:24	100.50%	
				BG	20190312 13:14:45	101.90%	
			3회차	K	20190312 15:49:17	100.50%	
				BG	20190312 15:29:33	101.90%	